

인천광역시서구

공보는 공문서로서의 효력을 갖는다.



<http://www.seo.incheon.kr/>

선	기관의장
람	

제1596호 2021. 5. 10(월)

차 례

고 시

- 인천광역시서구 고시 제88호 도시관리계획(오류지구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
도면 고시 ----- 1
- 인천광역시서구 고시 제89호 주택건설사업계획 변경승인 고시 ----- 34
- 인천광역시서구 고시 제90호 도시관리계획(검단1지구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
도면 고시 ----- 41
- 인천광역시서구 고시 제91호 인천광역시 서구 도로명주소 고시 ----- 83

공 고

- 인천광역시서구 공고 제833호 도로 불법 노상 적치물 등 보관 및 처리 공고 ----- 87
- 인천광역시서구 공고 제852호 등록 및 폐기 공인 공고 ----- 89

인천광역시서구청시 제2021-88호

도시관리계획(오류지구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도시관리계획(오류지구 지구단위계획)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에 따라 결정(변경)하고, 같은 법 제32조와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관계도서는 인천광역시 서구청(도시기획담당관, ☎ 032-560-5773)에 비치하고 일반인에게 보입니다.

2021. 5. 10.

인천광역시 서구청장

1. 결정(변경)취지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 제4호 마목에 따른 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을 결정(변경)하는 사항임

2. 위치

- 인천광역시 서구 오류동·왕길동 일원

3. 도시관리계획(오류지구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조서

- 가. 지구단위계획구역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조서 (변경없음)
 -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조서

도 면 표시번호	구역명	위 치	면 적 (㎡)	비고
-	오류지구 지구단위계획구역	인천광역시 서구 오류동·왕길동 일원	668,414.3	

나. 토지이용 및 시설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조서 (변경없음)

■ 용도지역 결정조서

구 분		면 적(㎡)	구 성 비(%)	비 고
총 계		668,414.3	100.0	
주거지역	소 계	617,707.2	92.4	
	제2종일반주거지역	478,732.7	71.6	
	제3종일반주거지역	98,140.9	14.7	
	준주거지역	40,833.6	6.1	
상업지역	소 계	50,707.1	7.6	
	일반상업지역	50,707.1	7.6	

■ 용도지구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 : 해당사항 없음

다. 도시기반시설의 배치와 규모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조서 (변경 없음)

가) 교통시설

■ 도로총괄표

유 형	합 계			1 류			2 류			3 류		
	노선수	연장 (m)	면적 (㎡)	노선수	연장 (m)	면적 (㎡)	노선수	연장 (m)	면적 (㎡)	노선수	연장 (m)	면적 (㎡)
합계	85	13,860	157,499.8	8	2,450	36,581.7	37	7,720	75,276.7	40	3,690	45,641.4
대로	3	1,177	15,934.4	-	-	-	-	-	-	3	1,177	15,934.4
중로	17	5,056	79,757.4	2	1,432	26,194.4	5	1,872	31,448.5	10	1,752	22,114.5
소로	65	7,627	61,808.0	6	1,018	10,387.3	32	5,848	43,828.2	27	761	7,592.5

■ 도로 결정조서

구분	구 모				기 능	연장 (m)	기 점	종 점	사용 형태	주 요 경과지	최 초 결정일	비고
	등급	류별	번호	폭원 (m)								
기정	대로	3	58	12.5~15.5 (25~28)	주간선 도로	651 (8,510)	오류동 822-3전 (동측지구계)	대로3-59 (광로3-23)	일반도로		인고 제118호 '98.6.12.	
기정	대로	3	59	12.5~15.5 (25~28)	보조 간선도로	318 (2,010)	오류동 383-4대 (광 3-23)	오류동 332답 (북측행정구역계)	일반도로		인고 제118호 '98.6.12.	
기정	대로	3	61	12.5~15.5 (25~28)	보조 간선도로	208 (4,420)	오류동 679답 (광로3-23)	오류동 산81-1입 (대로3-59)	일반도로		인고 제118호 '98.6.12.	
기정	중로	1	129	23	집산도로	284	대로3-58	중로1-130	일반도로		인고 제80호 '99.6.17.	
기정	중로	1	130	1~20 (20)	집산도로	1,148	왕길동 482-1	중로2-160	일반도로		인고 제80호 '99.6.17.	
기정	중로	2	424	15	국지도로	276	오류동 733-1전	중로2-162	일반도로		인고 제231호 '05.12.12.	
기정	중로	2	425	15	국지도로	94	중로1-130	중로2-424	일반도로		인고 제231호 '05.12.12.	
기정	중로	2	426	15	국지도로	343 (360)	대로3-58	중로1-130	일반도로		인고 제231호 '05.12.12.	
기정	중로	2	160	20 (15~20)	집산도로	299 (814)	대로3-58	대로3-61	일반도로		인고 제80호 '99.6.17.	
기정	중로	2	162	17	집산도로	860 (876)	대로3-58	대로3-61	일반도로		인고 제105호 '00.6.26.	
기정	중로	3	83	12	국지도로	61	중로3-84	중로3-86	일반도로		인고 제80호 '99.6.17.	
기정	중로	3	84	12	국지도로	346	중로3-86	중로3-86	일반도로		인고 제80호 '99.6.17.	
기정	중로	3	85	12	국지도로	61	중로3-84	중로3-86	일반도로		인고 제80호 '99.6.17.	
기정	중로	3	86	12~15	국지도로	274	중로1-129	중로2-160	일반도로		인고 제231호 '05.12.12.	
기정	중로	3	221	13	국지도로	136	중로1-130	중로2-426	일반도로		인고 제172호 '06.9.25.	
기정	중로	3	222	13	국지도로	222	중로1-162	중로2-426	일반도로		인고 제172호 '06.9.25.	
기정	중로	3	223	12	국지도로	319	중로1-130	중로3-223	일반도로		인고 제172호 '06.9.25.	
기정	중로	3	224	12	국지도로	16	중로2-160	중로3-223	일반도로		인고 제172호 '06.9.25.	
기정	중로	3	225	12	국지도로	299	중로1-130	중로3-225	일반도로		인고 제172호 '06.9.25.	
기정	중로	3	226	12	국지도로	18	중로1-129	중로3-225	일반도로		인고 제172호 '06.9.25.	
기정	소로	1	1	10	국지도로	34	중로2-162	소로2-1	일반도로		인고 제80호 '99.6.17.	
기정	소로	1	4	10	국지도로	373	중로2-160	대로3-59	일반도로		인고 제80호 '99.6.17.	
기정	소로	1	8	10-12	국지도로	330	중로1-129	중로1-130	일반도로		인고 제80호 '99.6.17.	
기정	소로	1	9	10	국지도로	20	소로2-16	중로1-130	일반도로		인고 제80호 '99.6.17.	
기정	소로	1	10	10	국지도로	239	중로2-162	소로1-8	일반도로		인고 제80호 '99.6.17.	
기정	소로	1	15	10	국지도로	22	중로2-160	소로2-9	일반도로		인고 제105호 '00.6.26.	

구분	규 모				기 능	연장 (m)	기 점	종 점	사용 형태	주 요 경과지	최 초 결정일	비고
	등급	류별	번호	폭원 (m)								
기정	소로	2	1	8	국지도로	518	소로2-2	소로3-1	일반도로		인고 제80호 99.6.17.	
기정	소로	2	2	8	국지도로	294	중로1-130	소로2-1	일반도로		인고 제80호 99.6.17.	
기정	소로	2	4	8	국지도로	426	소로1-4	소로2-35	일반도로		인고 제80호 99.6.17.	
기정	소로	2	5	8	국지도로	122	소로1-4	소로2-4	일반도로		인고 제80호 99.6.17.	
기정	소로	2	6	8	국지도로	146	소로2-4	소로2-4	일반도로		인고 제80호 99.6.17.	
기정	소로	2	7	8	국지도로	36	소로2-4	소로2-8	일반도로		인고 제80호 99.6.17.	
기정	소로	2	8	8	국지도로	115	소로2-9	소로2-35	일반도로		인고 제80호 99.6.17.	
기정	소로	2	9	8	국지도로	174	소로2-4	소로2-35	일반도로		인고 제80호 99.6.17.	
기정	소로	2	12	8	국지도로	473	소로1-4	소로1-4	일반도로		인고 제80호 99.6.17.	
기정	소로	2	16	8	국지도로	418	소로2-17	소로2-17	일반도로		인고 제80호 99.6.17.	
기정	소로	2	17	8	국지도로	225	소로1-10	소2-16	일반도로		인고 제80호 99.6.17.	
기정	소로	2	18	8	국지도로	150	소로2-17	소로2-17	일반도로		인고 제80호 99.6.17.	
기정	소로	2	21	8	국지도로	525	소로2-33	소로1-8	일반도로		인고 제80호 99.6.17.	
기정	소로	2	30	8	국지도로	136	소로2-1	소로2-1	일반도로		인고 제105호 00.6.26.	
기정	소로	2	31	8	국지도로	112	소로2-21	소로1-10	일반도로		인고 제105호 00.6.26.	
기정	소로	2	32	8	국지도로	100	소로2-21	소로1-10	일반도로		인고 제105호 00.6.26.	
기정	소로	2	33	8	국지도로	105	소로2-21	소로1-10	일반도로		인고 제105호 00.6.26.	
기정	소로	2	34	8	국지도로	89	중로1-130	중로2-426	일반도로		인고 제231호 05.12.12.	
기정	소로	2	35	8	국지도로	480	중로2-160	소로2-5	일반도로		인고 제172호 06.9.25.	
기정	소로	2	36	8	국지도로	106	소로2-1	소로1-8	일반도로		인고 제37호 14.2.24.	
기정	소로	2	37	8	국지도로	94	소로2-1	소로1-8	일반도로		인고 제37호 14.2.24.	
기정	소로	2	38	8	국지도로	142	소로2-12	소로2-12	일반도로		인고 제37호 14.2.24.	
기정	소로	2	39	8	국지도로	57	소로2-12	소로2-38	일반도로		인고 제37호 14.2.24.	
기정	소로	2	40	8	국지도로	50	소2-12	소1-4	일반도로		인고 제37호 14.2.24.	
기정	소로	2	41	8	국지도로	206	소로2-1	소로2-1	일반도로		인고 제80호 99.6.17.	
기정	소로	2	42	8	국지도로	65	중로2-162	소로2-1	일반도로		인고 제80호 99.6.17.	
기정	소로	2	43	8	국지도로	53	중로2-162	소로2-1	일반도로		인고 제80호 99.6.17.	
기정	소로	2	44	8	국지도로	63	소로2-2	소로3-26	일반도로		인고 제80호 99.6.17.	

구분	규 모				기 능	연장 (m)	기 점	종 점	사용 형태	주 요 경과지	최 초 결정일	비고
	등급	류별	번호	폭원 (m)								
기정	소로	2	45	8	국지도로	102	중로1-130	소로2-2	일반도로		인고 제80호 99.6.17.	
기정	소로	2	46	8	국지도로	18	소로2-4	소로2-35	일반도로		인고 제80호 99.6.17.	
기정	소로	2	47	8	국지도로	123	소로2-4	소로2-6	일반도로		인고 제80호 99.6.17.	
기정	소로	2	48	8	국지도로	125	중1-130	중2-426	일반도로		인고 제37호 14.2.24.	
기정	소로	3	12	6	특수도로	30	중로3-83	오류동 488전	보행자 전용도로		인고 제80호 99.6.17.	
기정	소로	3	13	6	특수도로	30	중로3-86	오류동 828-1전	보행자 전용도로		인고 제80호 99.6.17.	
기정	소로	3	14	6	특수도로	62	중로3-83	중로3-84	보행자 전용도로		인고 제80호 99.6.17.	
기정	소로	3	15	6	특수도로	57	중로3-84	중로3-85	보행자 전용도로		인고 제80호 99.6.17.	
기정	소로	3	16	6	특수도로	37	대로3-58	중로3-84	보행자 전용도로		인고 제80호 99.6.17.	
기정	소로	3	17	6	특수도로	36	대로3-58	중로3-84	보행자 전용도로		인고 제80호 99.6.17.	
기정	소로	3	23	4	특수도로	54	중로2-162	소로2-1	보행자 전용도로		인고 제80호 99.6.17.	
기정	소로	3	25	4	국지도로	43	소로2-2	오류동 산74-1입	일반도로		인고 제80호 99.6.17.	
기정	소로	3	26	4	특수도로	17	소로3-5	오류동 산60입	보행자 전용도로		인고 제80호 99.6.17.	
기정	소로	3	29	4	특수도로	18	중로1-130	소로2-1	보행자 전용도로		인고 제80호 99.6.17.	
기정	소로	3	31	4	특수도로	20	소로2-4	대로2-59	보행자 전용도로		인고 제80호 99.6.17.	
기정	소로	3	35	4	특수도로	20	대로3-58	소로2-12	보행자 전용도로		인고 제80호 99.6.17.	
기정	소로	3	36	4	특수도로	14	대로3-58	소로2-10	보행자 전용도로		인고 제80호 99.6.17.	
기정	소로	3	37	4	특수도로	23	중로3-223	중로1-130	보행자 전용도로		인고 제80호 99.6.17.	
기정	소로	3	38	4	특수도로	23	중로3-325	중로1-130	보행자 전용도로		인고 제80호 99.6.17.	
기정	소로	3	39	4	특수도로	23	오류동 490전	중로3-223	보행자 전용도로		인고 제80호 99.6.17.	
기정	소로	3	40	4	특수도로	23	오류동 828-1전	중로3-325	보행자 전용도로		인고 제80호 99.6.17.	
기정	소로	3	41	4	특수도로	18	오류동 491-3전	중로3-223	보행자 전용도로		인고 제80호 99.6.17.	
기정	소로	3	42	4	특수도로	18	중로3-225	오류동 491-3전	보행자 전용도로		인고 제80호 99.6.17.	
기정	소로	3	44	4	특수도로	20	소로2-16	소로1-8	보행자 전용도로		인고 제80호 99.6.17.	
기정	소로	3	45	4	특수도로	20	소로2-16	중로2-162	보행자 전용도로		인고 제80호 99.6.17.	
기정	소로	3	49	4	특수도로	20	중로2-162	소로2-21	보행자 전용도로		인고 제80호 99.6.17.	
기정	소로	3	60	4	특수도로	16	오류동 765-5학	중로2-162	보행자 전용도로		인고 제80호 99.6.17.	
기정	소로	3	61	4	특수도로	48	소로1-4	소로2-4	보행자 전용도로		인고 제80호 99.6.17.	

구분	규 모				기 능	연장 (m)	기 점	종 점	사용 형태	주 요 경과지	최 초 결정일	비고
	등급	류별	번호	폭원 (m)								
기정	소로	3	62	4	특수도로	22	중로2-160	소로2-9	보행자 전용도로		인고 제80호 `99.6.17.	
기정	소로	3	63	4	특수도로	22	소로2-21	소로1-10	보행자 전용도로		인고 제105호 `00.6.26.	
기정	소로	3	64	4	특수도로	27	소로2-21	중1-129	보행자 전용도로		인고 제37호 `14.2.24.	

■ 주차장 결정조서

구분	도 면 표시번호	시설명	위 치	면적(㎡)	최 초 결정일	비고
소계		노외주차장		6,819.2		
기정	1	노외주차장	오류동 1746-6	1,622.2	인고 제80호 `99.6.17.	
기정	2	노외주차장	오류동 1744-6	1,442.0	인고 제80호 `99.6.17.	
기정	3	노외주차장	오류동 1723-13	869.4	인고 제80호 `99.6.17.	
기정	4	노외주차장	오류동 1708-11	860.7	인고 제231호 `05.12.12.	
기정	5	노외주차장	오류동 1754-9	1,374.8	인고 제231호 `05.12.12.	
기정	6	노외주차장	왕길동 694-4	650.1	인고 제37호 `14.2.24.	

■ 철도 결정조서

구분	도 면 표시번호	시설명	시설의 종류	위 치		연장 (m)	면적 (㎡)	최 초 결정일	비고
				기점	종점				
기정	1	철 도	도시철도 정거장 (201 정거장)	오류동 1763-11	오류동 1763-15	60 (71)	855.0 (2,438)	인고 제128호 `17.7.24.	

나) 공간시설

■ 녹지 결정조서

구분	도 면 표시번호	시설명	시설의 종류	위 치	면적(㎡)	최 초 결정일	비고
소계			완충녹지		27,540.6		
기정	8	녹지	완충녹지	오류동 1763-12 일원	4,417.7 (21,026.1)	인고 제118호 `98.6.12.	

구분	도 면 표시번호	시설명	시설의 종류	위 치	면적(m ²)	최 초 결정일	비고
기정	14	녹지	완충녹지	오류동 1763-13 일원	4,728.3	인고 제80호 99.6.17.	
기정	15	녹지	완충녹지	오류동 1715-11 일원	2,301.6	인고 제80호 99.6.17.	
기정	16	녹지	완충녹지	오류동 1708-13 일원	3,660.1	인고 제80호 99.6.17.	
기정	17	녹지	완충녹지	오류동 1719-12 일원	4,155.4	인고 제172호 06.9.25.	
기정	18	녹지	완충녹지	왕길동 692-3 일원	1,465.8	인고 제172호 06.9.25.	
기정	19	녹지	완충녹지	왕길동 697-5 일원	3,393.9	인고 제172호 06.9.25.	
기정	20	녹지	완충녹지	왕길동 692-7	1,533.1	인고 제172호 06.9.25.	
기정	21	녹지	완충녹지	왕길동 1721-4	1,186.9	인고 제172호 06.9.25.	
기정	22	녹지	완충녹지	왕길동 696-5	697.8	인고 제172호 06.9.25.	
소계			경관녹지		16,196.7		
기정	17	녹지	경관녹지	오류동 1750-4	671.5	인고 제80호 99.6.17.	
기정	18	녹지	경관녹지	오류동 1758-12	943.5	인고 제80호 99.6.17.	
기정	19	녹지	경관녹지	오류동 1764	7,798.5	인고 제231호 05.12.12.	
기정	20	녹지	경관녹지	오류동 1723-14	1,320.8	인고 제80호 99.6.17.	
기정	21	녹지	경관녹지	왕길동 692-8	3,188.9	인고 제80호 99.6.17.	
기정	22	녹지	경관녹지	왕길동 695-5	2,273.5	인고 제80호 99.6.17.	

■ 공원 결정조서

구분	도 면 표시번호	공원명	시설의 종류	위 치	면적(m ²)	최 초 결정일	비고
기정	1	공원	근린공원	오류동 1722-11	10,870.3	인고 제231호 05.12.12.	
소계			어린이공원		9,203.2		
기정	1	공원	어린이공원	오류동 1751-8	2,063.0	인고 제80호 99.6.17.	
기정	2	공원	어린이공원	오류동 1726-10	2,075.8	인고 제80호 99.6.17.	
기정	3	공원	어린이공원	오류동 1721-3	3,324.6	인고 제80호 99.6.17.	
기정	4	공원	어린이공원	오류동 1708-12	1,739.8	인고 제80호 99.6.17.	

■ 공공공지 결정조서

구분	도 면 표시번호	시설명	위 치	면적(㎡)	최초결정일	비고
기정	1	공공공지	오류동 1747-23일원	3,570.7	인고 제80호 '99.6.17.	

다) 공공·문화체육시설

■ 학교 결정조서

구분	도 면 표시번호	시설명	시설의 종류	위 치	면적(㎡)	최초결정일	비고
소계		학교			27,911.3	-	
기정	1	학교	초등학교	오류동 1720-1일원	14,633.1	인고 제80호 '99.6.17.	
기정	2	학교	중 학 교	오류동 1723-15	13,278.2	인고 제231호 '05.12.12.	

■ 공공청사 결정조서

구분	도 면 표시번호	시설명	시설의 종류	위 치	면적(㎡)	최초결정일	비고
소계		공공청사			3,661.2		
기정	1	공공청사	동사무소	왕길동 692-5	1,503.1	인고 제80호 '99.6.17.	
기정	2	공공청사	경찰파출소	왕길동 692-6	860.9	인고 제231호 '05.12.12.	
기정	4	공공청사	소방소	오류동 1735-3	1,297.2	인고 제231호 '05.12.12.	

■ 문화시설 결정조서

구분	도 면 표시번호	시설명	시설의 종류	위 치	면적(㎡)	최초결정일	비고
기정	1	문화시설	문화시설	왕길동 695-1	1,098.9	인고 제231호 '05.12.12.	

라) 유통 및 공급시설

■ 가스공급시설 결정조서

구분	도 면 표시번호	시설명	위 치	면적(㎡)	최초결정일	비고
기정	1	가스공급설비	왕길동 697-6	18.0	인고 제304호 '10.10.25.	

마) 환경기초시설

■ 하수도 결정조서

구분	도 면 표시번호	시설명	시설의 종류	위 치	면적(㎡)	최초결정일	비고
소계			오수펌프장		215.0		
기정	1	하수도	오수펌프장	오류동 1708-14	105.0	인고 제128호 17.07.24.	
기정	2	하수도	오수펌프장	오류동 1750-5	110.0	인고 제128호 17.07.24.	

라. 가구 및 획지의 규모와 구성에 관한 도시관리계획결정(변경)조서(변경있음)

1) 가구 및 획지의 규모와 구성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조서(변경있음)

■ 단독주택용지(A-1) (변경있음)

- 획지 분할 및 합병 기준

- 최소획지면적은 90㎡이고 권장면적은 300㎡이상으로 한다.
- 대지분할 할 경우 1개 필지가 200㎡이상으로 1개의 필지가 획지 계획의 기준에 만족하고 잔여획지가 최소면적의 80%이상일 경우 대지분할을 할 수 있다.
- 2개 이상의 필지가 사용 목적이 서로 같은 경우 합병 할 수 있음.

기 정						변 경					
도면 번호	가구 번호	면적 (㎡)	획 지		비 고	도면 번호	가구 번호	면적 (㎡)	획 지		비 고
			위치	면적 (㎡)					위치	면적 (㎡)	
A-1	1	1,292.6	1	270.1		A-1	1	1,292.6	1	270.1	
			2	225.6					2	225.6	
			3	170.9					3	170.9	
			4	171.8					4	171.8	
			5	210.2					5	210.2	
			6	244.0					6	244.0	
	2	1,125.9	1	319.4		A-1	2	1,125.9	1	319.4	
			2	320.0					2	320.0	
			3	486.5	2개 획지로 분할 가능				3	486.5	2개 획지로 분할 가능
	3	3,965.0	1	544.7	2개 획지로 분할 가능	A-1	3	3,965.0	1	544.7	2개 획지로 분할 가능
			2	890.5	3개 획지로 분할 가능				2	890.5	3개 획지로 분할 가능

기 정					변 경										
도면 번호	가구 번호	면적 (㎡)	획 지		비 고	도면 번호	가구 번호	면적 (㎡)	획 지		비 고				
			위치	면적 (㎡)					위치	면적 (㎡)					
			3	271.5					3	271.5					
			4	273.9					4	273.9					
			5	601.7	2개 획지로 분할 가능				5	601.7	2개 획지로 분할 가능				
			6	246.0					6	246.0					
			7	357.8					7	357.8					
			8	494.6	2개 획지로 분할 가능				8	494.6	2개 획지로 분할 가능				
			9	284.3					9	284.3					
			4	4,239.0	1				425.4		4	4,239.0	1	425.4	
					2				333.0				2	333.0	
	3	285.4					3	285.4							
	4	222.8					4	222.8							
	5	808.0			3개 획지로 분할 가능		5	808.0	3개 획지로 분할 가능						
	6	242.0					6	483.4							
	7	241.4					8	242.8							
	8	242.8					9	301.4							
	9	301.4					10	503.0	2개 획지로 분할 가능						
	10	503.0			2개 획지로 분할 가능		11	223.0							
	11	223.0					12	410.8							
	12	410.8					5	2,425.7	1	232.6					
	1	232.6		2	279.6										
	2	279.6		3	264.5										
	3	264.5		4	289.4										
	4	289.4		5	271.9										
	5	271.9		6	189.5										
	6	189.5		7	310.7										
	7	310.7		8	296.5										
	8	296.5		9	291.0										
	6	5,218.8	1	293.4	-		6	5,218.8	1	293.4	-				
			2	324.9					2	324.9					
			3	504.3	2개 획지로 분할 가능				3	504.3	2개 획지로 분할 가능				
			4	350.4					4	350.4					
			5	290.9					5	290.9					
			6	248.4					6	248.4					
			7	206.9					7	206.9					
			8	351.1					8	351.1					
			9	315.5					9	315.5					
10			366.9		10	366.9									
11			243.5		11	243.5									
12			514.3		12	514.3									
13			318.7		13	318.7									
14			566.4		14	566.4									
15			323.2		15	323.2									
7	3,401.0	1	273.7		7	3,401.0	1	273.7							

기 정					변 경							
도면 번호	가구 번호	면적 (㎡)	획 지		비 고	도면 번호	가구 번호	면적 (㎡)	획 지		비 고	
			위치	면적 (㎡)					위치	면적 (㎡)		
			2	313.6					2	313.6		
			3	591.1	2개 획지로 분할 가능				3	591.1	2개 획지로 분할 가능	
			4	223.4					4	223.4		
			5	369.6					5	369.6		
			6	179.6					6	179.6		
			7	183.0					7	183.0		
			8	398.9					8	398.9		
			9	232.9					9	232.9		
			10	221.3					10	221.3		
			11	208.0					11	208.0		
			12	205.9					12	205.9		
			8	4,701.5					1	326.8		8
	2	199.7					2	199.7				
	3	180.8					3	180.8				
	4	989.9				3개 획지로 분할 가능	4	989.9	3개 획지로 분할 가능			
	5	474.5					5	474.5				
	6	579.5				2개 획지로 분할 가능	6	579.5	2개 획지로 분할 가능			
	7	672.5				2개 획지로 분할 가능	7	672.5	2개 획지로 분할 가능			
	8	476.6					8	476.6				
	9	336.6					9	336.6				
	10	464.6					10	464.6				
	9	3,333.8		1	688.9	2개 획지로 분할 가능	9	3,333.8		1	688.9	2개 획지로 분할 가능
				2	338.5					2	338.5	
				3	576.9	2개 획지로 분할 가능				3	576.9	2개 획지로 분할 가능
				4	213.4					4	213.4	
				5	588.1					5	588.1	
				6	261.5					6	261.5	
				7	332.9					7	332.9	
				8	333.6					8	333.6	
	13	4,076.0		2	255.4		13	4,076.0		2	255.4	
				3	351.5					3	351.5	
				4	352.3					4	352.3	
				5	473.0					5	473.0	
				6	482.9					6	482.9	
				7	405.3					7	405.3	
				8	262.4					8	262.4	
9				293.3		9				293.3		
10				340.6		10				340.6		
11				379.3		11				379.3		
12				480.0		12				480.0		
14				5,977.8		2				311.0		14
	3	274.8				3	274.8					

기 정					변 경						
도면 번호	가구 번호	면적 (㎡)	획 지		비 고	도면 번호	가구 번호	면적 (㎡)	획 지		비 고
			위치	면적 (㎡)					위치	면적 (㎡)	
			4	242.5					4	242.5	
			5	569.5	2개 획지로 분할 가능				5	569.5	2개 획지로 분할 가능
			6	1,965.2	5개 획지로 분할 가능				6	1,965.2	5개 획지로 분할 가능
			7	769.1	2개 획지로 분할 가능				7	769.1	2개 획지로 분할 가능
			8	265.4					8	265.4	
			9	266.4					9	266.4	
			10	615.3	2개 획지로 분할 가능				10	615.3	2개 획지로 분할 가능
			11	698.6	2개 획지로 분할 가능				11	698.6	2개 획지로 분할 가능
	15	3,263.7	1	295.7		15	3,263.7	1	295.7		
			2	401.9				2	401.9		
			3	419.9				3	419.9		
			4	328.4				4	328.4		
			5	346.5				5	346.5		
			7	342.1				7	342.1		
			8	369.5				8	369.5		
			9	245.6				9	245.6		
			10	229.6				10	229.6		
			11	284.5	환지도로			11	284.5	환지도로	
			16	1,142.3	1			262.9		16	1,142.3
	2	303.6				2	303.6				
	3	360.9				3	360.9				
	4	214.9				4	214.9				
	47	5,789.1	1	265.3		47	5,789.1	1	265.3		
			2	451.5				2	451.5		
			3	563.4	2개 획지로 분할 가능			3	563.4	2개 획지로 분할 가능	
			4	235.5				4	235.5		
			5	623.5	2개 획지로 분할 가능			5	623.5	2개 획지로 분할 가능	
			6	236.1				6	236.1		
			7	318.3				7	318.3		
			8	366.6				8	366.6		
			9	494.8				9	494.8		
			10	851.3	3개 획지로 분할 가능			10	851.3	3개 획지로 분할 가능	
			11	328.6				11	328.6		
12			691.2	2개 획지로 분할 가능	12			691.2	2개 획지로 분할 가능		
13			363.0		13			363.0			
48	4,404.5	1	861.0	3개 획지로 분할 가능	48	4,404.5	1	861.0	3개 획지로 분할 가능		
		2	318.5				2	318.5			
		3	241.6				3	241.6			
		4	772.6	2개 획지로 분할 가능			4	772.6	2개 획지로 분할 가능		
		5	229.9				5	229.9			
		6	318.7				6	318.7			

기 정					변 경						
도면 번호	가구 번호	면적 (㎡)	획 지		비 고	도면 번호	가구 번호	면적 (㎡)	획 지		비 고
			위치	면적 (㎡)					위치	면적 (㎡)	
			7	446.8					7	446.8	
			8	641.7	2개 획지로 분할 가능				8	641.7	2개 획지로 분할 가능
			9	573.7	2개 획지로 분할 가능				9	573.7	2개 획지로 분할 가능
	49	4,567.2	1	1,050.8	3개 획지로 분할 가능	49	4,567.2	1	1,050.8	3개 획지로 분할 가능	
			2	615.2	2개 획지로 분할 가능			2	615.2	2개 획지로 분할 가능	
			3	224.4				3	224.4		
			4	367.1				4	367.1		
			5	724.0	2개 획지로 분할 가능			5	724.0	2개 획지로 분할 가능	
			6	578.7	2개 획지로 분할 가능			6	578.7	2개 획지로 분할 가능	
			7	238.7				7	238.7		
			8	768.3	2개 획지로 분할 가능			8	768.3	2개 획지로 분할 가능	
	50	3,536.3	1	254.3		50	3,536.3	1	254.3		
			2	243.7				2	243.7		
			3	829.4	3개 획지로 분할 가능			3	829.4	3개 획지로 분할 가능	
			4	402.5				4	402.5		
			5	382.0				5	382.0		
			6	384.4				6	384.4		
			7	305.6				7	305.6		
			8	734.4	3개 획지로 분할 가능			8	734.4	3개 획지로 분할 가능	
	52	1,367.5	1	350.4		52	1,367.5	1	350.4		
			2	324.4				2	324.4		
			3	324.4				3	324.4		
			4	368.3				4	368.3		
	53	1,599.3	1	333.9		53	1,599.3	1	333.9		
			2	265.3				2	265.3		
			3	264.1				3	264.1		
			4	229.6				4	229.6		
			5	506.4				5	506.4		
54	445.9	1	199.0		54	445.9	1	199.0			
		2	246.9				2	246.9			
55	4,748.8	1	280.4		55	4,748.8	1	280.4			
		2	280.4				2	280.4			
		3	234.4				3	234.4			
		4	419.2				4	419.2			
		5	343.1				5	343.1			
		6	740.3	2개 획지로 분할 가능			6	740.3	2개 획지로 분할 가능		
		7	317.8				7	317.8			
		8	266.4				8	266.4			

기 정					변 경						
도면 번호	가구 번호	면적 (㎡)	획 지		비 고	도면 번호	가구 번호	면적 (㎡)	획 지		비 고
			위치	면적 (㎡)					위치	면적 (㎡)	
			9	381.0					9	381.0	
			10	481.2					10	481.2	
			11	436.0					11	436.0	
			12	263.8					12	263.8	
			13	304.8					13	304.8	
	56	3,144.9	1	627.0			56	3,144.9	1	627.0	
			2	206.0					2	206.0	
			3	220.7					3	220.7	
			4	340.2					4	340.2	
			5	568.6					5	568.6	
			6	253.1					6	253.1	
			7	201.2					7	201.2	
			8	728.1	3개 획지로 분할 가능				8	728.1	3개 획지로 분할 가능
	57	2,035.9	1	266.6			57	2,035.9	1	266.6	
			2	391.5					2	391.5	
			3	327.6					3	327.6	
			4	232.3					4	232.3	
			5	234.8					5	234.8	
			6	235.2					6	235.2	
			7	347.9					7	347.9	
	58	841.6	4	272.2			58	841.6	4	272.2	
			5	284.6					5	284.6	
			6	284.8					6	284.8	
	62	1,716.4	1	250.2			62	1,716.4	1	250.2	
			2	763.9	3개 획지로 분할 가능				2	763.9	3개 획지로 분할 가능
3			267.4		3	267.4					
4			434.9		4	434.9					
63	1,383.1	1	350.5		63	1,383.1	1	350.5			
		2	203.2				2	203.2			
		3	251.3				3	251.3			
		4	578.1				4	578.1			
64	6,447.5	1	226.4		64	6,447.5	1	226.4			
		2	513.3				2	513.3			
		3	1,373.3				3	1,373.3			
		4	1,716.4				4	1,716.4			
		5	439.2				5	439.2			
		6	393.1				6	393.1			
		7	263.7				7	263.7			
		8	554.2				8	554.2			
		9	782.7				9	782.7			

기 정					변 경						
도면 번호	가구 번호	면적 (㎡)	획 지		비 고	도면 번호	가구 번호	면적 (㎡)	획 지		비 고
			위치	면적 (㎡)					위치	면적 (㎡)	
	65	2,581.5	10	185.2		65	2,581.5	10	185.2		
			1	202.5				1	202.5		
			2	425.8				2	425.8		
			3	342.5				3	342.5		
			4	955.4				4	955.4		
			5	377.3				5	377.3		
	66	5,844.9	5,844.9	6	278.0		66	5,844.9	6	278.0	
				1	258.0				1	258.0	
				2	329.9				2	329.9	
				3	330.9				3	330.9	
				4	336.4				4	336.4	
				5	342.4				5	342.4	
				6	492.7				6	492.7	
				7	1,980.4	6개 획지로 분할 가능			7	1,980.4	6개 획지로 분할 가능
				8	424.1				8	424.1	
				9	495.2				9	495.2	
				10	191.6				10	191.6	
				11	331.3				11	331.3	
	12	332.0		12	332.0						
	67	4,107.5	4,107.5	1	457.5		67	4,107.5	1	457.5	
				2	300.0				2	300.0	
				3	300.0				3	300.0	
				4	404.6				4	404.6	
				5	403.2				5	403.2	
				6	338.1				6	338.1	
				7	250.9				7	250.9	
				8	263.7				8	263.7	
				9	860.6				9	860.6	
				10	328.9				10	328.9	
				11	200.0				11	200.0	
	68	2,302.8	2,302.8	1	340.0		68	2,302.8	1	340.0	
				2	873.6	2개 획지로 분할 가능			2	873.6	2개 획지로 분할 가능
				3	695.5	2개 획지로 분할 가능			3	695.5	2개 획지로 분할 가능
				4	393.7				4	393.7	
	69	5,043.9	5,043.9	1	213.8		69	5,043.9	1	213.8	
				2	307.0				2	307.0	
3				164.8		3			164.8		
4				267.5		4			267.5		
5				180.1		5			180.1		
6				447.1		6			447.1		
7				329.1		7			329.1		
8				222.9		8			222.9		
9				179.8		9			179.8		
10				141.0		10			141.0		

기 정					변 경							
도면 번호	가구 번호	면적 (㎡)	획 지		비 고	도면 번호	가구 번호	면적 (㎡)	획 지		비 고	
			위치	면적 (㎡)					위치	면적 (㎡)		
			11	171.1					11	171.1		
			12	448.0					12	448.0		
			13	433.7					13	433.7		
			14	573.1					14	573.1		
			15	592.3					15	592.3		
			16	372.6					16	372.6		
	70	2,633.1		1	1,856.9	4개 획지로 분할 가능	70	2,633.1		1	1,856.9	4개 획지로 분할 가능
				3	300.4					3	300.4	
				4	282.0					4	282.0	
				5	193.8					5	193.8	
	71	2,276.2		1	213.9		71	2,276.2		1	213.9	
				2	276.3					2	276.3	
				3	772.9					3	772.9	
				4	508.1					4	508.1	
				5	505.0					5	505.0	
	72	1,929.3		1	380.6		72	1,929.3		1	380.6	
				2	344.7					2	344.7	
				3	292.9					3	292.9	
				4	664.4					4	664.4	
				5	121.5					5	121.5	
				6	125.2					6	125.2	
	73	2,400.3		1	345.6		73	2,400.3		1	345.6	
				2	665.1	2개 획지로 분할 가능				2	665.1	2개 획지로 분할 가능
				3	362.4					3	362.4	
4				210.9		4				210.9		
5				200.2		5				200.2		
6				269.1		6				269.1		
13				347.0		13				347.0		
86				2,653.4		1				320.9		86
	2	328.8				2	328.8					
	3	326.0				3	326.0					
	4	323.9				4	323.9					
	5	325.9				5	325.9					
	6	326.9				6	326.9					
	7	328.5				7	328.5					
	8	372.5				8	372.5					
87	3,024.5		1	318.8		87	3,024.5		1	318.8		
			2	288.4					2	288.4		
			3	290.4					3	290.4		
			4	292.5					4	292.5		

기 정					변 경						
도면 번호	가구 번호	면적 (㎡)	획 지		비 고	도면 번호	가구 번호	면적 (㎡)	획 지		비 고
			위치	면적 (㎡)					위치	면적 (㎡)	
			5	292.6					5	292.6	
			6	277.1					6	277.1	
			7	281.8					7	281.8	
			8	283.1					8	283.1	
			9	285.1					9	285.1	
			10	414.7					10	414.7	

■ 단독주택용지 가구 및 획지 결정(변경) 사유서

가구번호	위 치	결정(변경) 내용	결정(변경) 사유서
4	6, 7	◦ 획지합병 - 6 : 242.0㎡ - 7 : 241.4㎡ ⇒ 6 : 483.4㎡	◦ 획지합병 기준에 적합한 획지합병을 통해 적정규모의 개발 유도도 주거 활성화 도모

■ 단독주택용지(A-2) (변경없음)

- 획지 분할 및 합병 기준
- 최소획지면적은 90㎡이고 권장면적은 300㎡이상으로 한다.
- 대지분할 할 경우 1개 필지가 200㎡이상으로 1개의 필지가 획지 계획의 기준에 만족하고 잔여획지가 최소면적의 80%이상일 경우 대지분할을 할 수 있다.
- 2개 이상의 필지가 사용 목적이 서로 같은 경우 합병 할 수 있음.

도면번호	가구번호	면적(㎡)	획 지		비 고
			위치	면적(㎡)	
A-2	10	1,429.5	1	414.1	
			2	1,015.4	3개 획지로 분할 가능
	11	1,033.4	1	1,033.4	3개 획지로 분할 가능
			13	812.6	
	14	690.5	1	251.6	
			12	438.9	

도면번호	가구번호	면적(㎡)	획 지		비 고
			위치	면적(㎡)	
	15	1,075.5	6	1,075.5	
	16	2,150.5	5	549.6	
			6	471.3	
			7	448.2	
			8	681.4	2개 획지로 분할 가능
	51	2,307.4	1	344.4	
			2	554.1	
			3	388.1	
			4	528.0	2개 획지로 분할 가능
			5	492.8	
	54	2,383.0	3	782.7	
			4	273.7	
			5	350.0	
			6	339.7	
	58	1,891.5	7	636.9	
			1	809.1	2개 획지로 분할 가능
			2	741.7	2개 획지로 분할 가능
			3	340.7	
	59	1,381.4	1	454.9	
			2	445.5	
			3	481.0	
	60	2,492.4	1	350.0	
			2	422.9	
			3	429.1	
			4	342.9	
			5	538.1	
			6	409.4	
	61	3,464.3	1	606.0	
			2	449.6	
			3	544.0	
4			730.8	2개 획지로 분할 가능	
5			517.0		
6			616.9	2개 획지로 분할 가능	
62	1,971.1	5	362.3		
		6	393.8		
		7	438.6		
		8	394.2		
		9	382.2		
63	1,444.0	5	388.8		
		6	174.2		
		7	258.8		
		8	240.6		
		9	381.6		

도면번호	가구번호	면적(㎡)	획 지		비 고
			위치	면적(㎡)	
	70	591.8	6	306.4	
			7	285.4	
	71	1,869.7	6	235.8	
			7	233.6	
			8	408.8	
			9	593.2	
			10	398.3	
	72	1,987.9	7	470.7	
			8	398.4	
			9	431.0	
			10	406.3	
	73	1,785.0	11	281.5	
			7	207.5	
			8	301.8	
			9	352.3	
			10	265.1	
	75	1,985.4	11	367.1	
			12	291.2	
			1	577.5	
			2	200.3	
			3	182.0	
			4	197.8	
			5	329.2	
	83	3,546.7	6	225.0	
			7	273.6	
			1	397.5	
			2	403.5	
			3	401.9	
4			398.2		
5			387.2		
6			325.4		
7			478.6		
8	387.0				
			9	367.4	

■ 공동주택용지(B-1, 2, 3) (변경없음)

- 획지 분할 및 합병 기준

- 사업계획 승인 대상면적 규모이상 확보토록 최소면적(아파트 10,000)이상으로 공동건축 유도

도면번호	가구번호	면적(㎡)	획 지		비 고
			위치	면적(㎡)	
B-1	45	16,307.7	1	16,307.7	
B-2	79	26,998.5	1	26,998.5	
	80	48,332.8	1	48,332.8	
	81	37,990.3	1	26,336.1	
			2	11,654.2	
B-3	74	39,789.9	1	10,017.6	
			2	19,590.4	
			3	10,042.1	
			4	139.8	환지도로
	76	17,969.9	1	17,891.5	
2			78.4	환지도로	

■ 공동주택용지(B-4) (변경없음)

- 획지 분할 및 합병 기준

- 최소획지면적은 270㎡이상으로 한다.
- 2개 이상의 필지가 사용 목적이 서로 같은 경우 합병 할 수 있음.

도면번호	가구번호	면적(㎡)	획 지		비 고
			위치	면적(㎡)	
B-4	83	1,859.0	10	584.3	
			11	561.5	
			12	396.9	
			13	316.3	
	84	1,974.9	1	327.1	
			2	327.6	
			3	334.0	
			4	326.7	
			5	326.0	
			6	333.5	
	85	1,984.1	1	328.6	
			2	329.0	
			3	335.2	
4			328.1		
5			328.1		
6			335.1		

■ 준주거용지(C-1) (변경없음)

- 획지 분할 및 합병 기준

- 대지분할 할 경우 1개 획지가 최소 350㎡이상일 경우 분할 할 수 있으며,
- 2개 이상의 필지가 사용 목적이 서로 같은 경우 합병 할 수 있음.

도면번호	가구번호	면적(㎡)	획 지		비 고
			위치	면적(㎡)	
C-1	18	1,979.0	1	514.6	
			2	491.7	
			3	327.2	
			4	314.0	
			5	331.5	
	19	786.9	1	516.0	
			2	270.9	
	20	3,435.9	1	675.5	
			2	452.0	
			3	333.7	
			4	247.3	
			5	241.0	
			6	295.0	
			7	417.3	
			8	255.9	
			9	518.2	
	21	1,911.9	1	230.5	
			2	199.8	
			3	1,481.6	3개 획지로 분할 가능
	22	1,616.4	1	329.9	
			2	324.8	
			3	961.7	2개 획지로 분할 가능
	23	1,052.5	1	332.0	
			2	216.6	
			3	503.9	
	24	1,044.2	1	585.0	
			2	189.0	
			3	270.2	
	25	646.3	1	249.3	
			2	397.0	
26	1,813.1	1	432.5		
		2	366.0		
		3	262.2		
		4	452.2		
		5	300.2		
27	2,937.9	1	431.4		

도면번호	가구번호	면적(㎡)	획 지		비 고
			위치	면적(㎡)	
			2	258.2	
			3	444.6	
			4	349.4	
			5	380.2	
			6	504.6	
			7	308.3	
			8	261.2	
	28	1,966.4	1	438.8	
			2	267.7	
			3	249.3	
			4	388.9	
			5	349.8	
			6	271.9	
	29	1,524.7	1	196.3	
			2	366.5	
3			294.9		
4			227.7		
5			439.3		

■ 준주거용지(C-2) (변경없음)

- 획지 분할 및 합병 기준

- 대지분할 할 경우 1개 획지가 최소 350㎡이상일 경우 분할 할 수 있으며,
- 2개 이상의 필지가 사용 목적이 서로 같은 경우 합병 할 수 있음.

도면번호	가구번호	면적(㎡)	획 지		비 고
			위치	면적(㎡)	
C-2	46	996.7	1	497.6	
			2	499.1	
	77	3,280.9	1	1,064.6	
			2	823.3	
			3	753.3	
			4	639.7	
	78	2,029.0	1	1,038.5	-
			2	990.5	-
	88	2,732.2	1	1,264.7	
			2	752.3	
			3	715.2	

■ 일반상업용지(D-1) (변경없음)

- 획지 분할 및 합병 기준

- 대지분할 할 경우 1개 획지가 최소 350m²이상일 경우 분할 할 수 있으며,
- 2개 이상의 필지가 사용 목적이 서로 같은 경우 합병 할 수 있음.

도면번호	가구번호	면적(m ²)	획 지		비 고
			위치	면적(m ²)	
D-1	31	1,807.1	1	324.2	-
			2	300.0	-
			3	421.9	-
			4	567.1	-
			5	193.9	-
	32	1,628.6	1	423.1	-
			2	580.9	-
			3	624.6	-
	33	1,512.3	1	949.6	-
			2	562.7	-
	34	1,859.6	1	721.9	-
			2	721.9	-
3			415.8	-	

■ 일반상업용지(D-2) (변경없음)

- 획지 분할 및 합병 기준

- 대지분할 할 경우 1개 획지가 최소 350m²이상일 경우 분할 할 수 있으며,
- 2개 이상의 필지가 사용 목적이 서로 같은 경우 합병 할 수 있음.

도면번호	가구번호	면적(m ²)	획 지		비 고
			위치	면적(m ²)	
D-2	35	1,629.6	1	198.3	
			2	311.0	
			3	409.0	
			4	347.2	
			5	364.1	
	37	1,248.7	1	440.4	
			2	231.4	

			3	346.8	
			4	230.1	
	38	1,326.3	1	401.5	
			2	348.0	
			3	576.8	
	39	1,753.9	1	454.6	
			2	545.9	
			3	347.2	
			4	173.6	
			5	232.6	
	41	3,400.0	1	238.4	
			2	347.2	
			3	380.6	
			4	397.0	
			5	399.7	
			6	568.8	
			7	479.8	
			8	295.1	
	42	1,609.7	1	301.4	2획지와 공동개발 권장
			2	325.2	1획지와 공동개발 권장
			3	337.7	4획지와 공동개발 권장
			4	645.4	3획지와 공동개발 권장
	43	1,527.1	1	1,527.1	2개 획지로 분할 가능
	44	3,408.3	1	658.4	2획지와 공동개발 권장
			2	363.9	1획지와 공동개발 권장
			3	497.9	
			4	474.3	
			5	577.5	
6			275.9		
7			560.4		

■ 교육시설용지 (변경없음)

- 학교용지(E)

도면번호	가구번호	면적(㎡)	획 지		비 고
			위치	면적(㎡)	
E-1	75	14,633.1	8	14,633.1	초등1
E-2	53	13,278.2	8	13,278.2	중학교

■ 공공업무시설용지 (변경없음)

- 공공업무시설용지(F)

도면번호	가구번호	면적(㎡)	획 지		비 고
			위치	면적(㎡)	
F-1	79	2,364.0	2	1,503.1	동사무소
			3	860.9	경찰파출소
F-2	46	1,297.2	3	1,297.2	소방파출소

■ 기타시설용지 (변경없음)

- 문화시설용지(G)

도면번호	가구번호	면적(㎡)	획 지		비 고
			위치	면적(㎡)	
E-1	75	14,633.1	8	14,633.1	초등1
E-2	53	13,278.2	8	13,278.2	중학교

- 주차장용지

도면번호	가구번호	면적(㎡)	획 지		비 고
			위치	면적(㎡)	
주차장1	40	1,622.2	1	1,622.2	주차전용 건축물 허 용
주차장2	36	1,442.0	1	1,442.0	
주차장3	53	869.4	6	869.4	
주차장4	68	860.7	5	860.7	
주차장5	6	1,374.8	16	1,374.8	
주차장6	77	650.1	5	650.1	

2) 건축물에 대한 용도·건폐율·용적률·높이·배치·형태·색채·건축선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조서 (변경없음)

■ 단독주택용지(A-1)

도면번호	위치	구분	계 획 내 용	
A-1	A-1	용 도	허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단독주택(다중주택, 공관제외) • 종교시설 중 종교집회장(타종 및 확장장치가 없는 것에 한함) • 노유자시설 중 아동관련시설 • 존치건축물 중 기존근린생활시설은 허용(단, 신축시 불허)
			불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허용되는 용도이외의 용도 • 지하층 주거용도 • 교육환경보호구역제한용도(교육환경보호구역에 한함)

		건폐율	• 60% 이하
		용적률	• 160% 이하
		높이	• 3층 이하 (단, 1층 전부를 피로티 구조로 하여 주차장으로 사용할 경우 4층까지 허용)
		획지당 세대수	• 4세대 이하(획지의 분할 또는 합병의 경우 변경된 획지를 기준)

■ 단독주택용지(A-2)

도면 번호	위치	구분	계 획 내 용	
A-2	A-2	용도	허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단독주택(다중주택, 공관제외) • 복합주택(점포형주택으로, 2층 이하에 한하여 근린생활시설 허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1종근린생활시설, 제2종근린생활시설용도중 불허용도 이외의 용도 •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중 주유소, 액화가스충전소
			불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1종근린생활시설, 제2종근린생활시설 중 변전소, 정수장등 이와 유사한 시설, 안마시술소, 단란주점, 옥외골프연습장등 • 지하층 주거용도 • 교육환경보호구역제한용도(교육환경보호구역에 한함)
		건폐율	• 60% 이하	
		용적률	• 160% 이하	
		높이	• 3층 이하 (단, 1층 전부를 피로티 구조로 하여 주차장으로 사용할 경우 4층까지 허용)	
		획지당 세대수	• 4세대 이하(획지의 분할 또는 합병의 경우 변경된 획지를 기준)	

■ 공동주택용지(B-1)

도면 번호	위치	구분	계 획 내 용	
B-1	B-1	용도	허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2호 공동주택 중 아파트 • 주택법 및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의한 부대시설, 복리시설
			불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허용용도 이외의 건축물 •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등 기타 법령에 의해 당해 토지에 불허하는 용도
		건폐율	• 30% 이하	
		용적률	• 230% 이하	
		높이	• 18층 이하	
		배치 및 건축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m도로변 건축한계선 2m지정, 10m-12m도로(소로1-8)변 건축한계선 1m지정 (위치조정) 	
외관 및 형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아파트 1동의 전면길이는 시각적개방감 및 심리적 중압감 배제를 위해 최대길이 80m 이내로 한다. • 지붕의 형태는 경사지붕을 원칙으로 하며, 기타 우수한 디자인 형태로 채택된 지붕은 허가권자의 결정에 따른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경사지붕 설치시 옥상의 설비기기등 경관불량요소는 건축물전면에서 보이지 않도록 함 			

■ 공동주택용지(B-2)

도면번호	위치	구분	계 획 내 용	
B-2	B-2	용 도	허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2호 공동주택 중 아파트 • 주택법 및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의한 부대시설, 복리시설
			불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허용용도 이외의 건축물 •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등 기타 법령에 의해 당해 토지에 불허하는 용도
		건폐율	• 30% 이하	
		용적률	• 200% 이하	
		높 이	• 15층 이하	
		배치 및 건축선	• 15m도로변 건축한계선 10m지정	
외관 및 형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아파트 1동의 전면길이는 시각적개방감 및 심리적 중압감 배제를 위해 최대길이 80m 이내로 한다. • 지붕의 형태는 경사지붕을 원칙으로 하며, 기타 우수한 디자인 형태로 채택된 지붕은 허가권자의 결정에 따른다. - 경사지붕 설치시 옥상의 설비기기등 경관불량요소는 건축물 전면에서 보이지 않도록 함. 			

■ 공동주택용지(B-3)

도면번호	위치	구분	계 획 내 용	
B-3	B-3	용 도	허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2호 공동주택 중 아파트 • 주택법 및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의한 부대시설, 복리시설
			불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허용용도 이외의 건축물 •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등 기타 법령에 의해 당해 토지에 불허하는 용도
		건폐율	• 30% 이하	
		용적률	• 230% 이하	
		높 이	• 20층 이하	
		배치 및 건축선	• 15m도로(중2-425)변 건축한계선 1m지정	
외관 및 형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아파트 1동의 전면길이는 시각적개방감 및 심리적 중압감 배제를 위해 최대길이 80m 이내로 한다. • 지붕의 형태는 경사지붕을 원칙으로 하며, 기타 우수한 디자인 형태로 채택된 지붕은 허가권자의 결정에 따른다. - 경사지붕 설치시 옥상의 설비기기 등 경관불량요소는 건축물 전면에서 보이지 않도록 함. 			

■ 공동주택용지(B-4)

도면 번호	위치	구분	계 획 내 용	
B-4	B-4	용 도	허용	•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2호 공동주택 중 다세대 및 연립주택
			불허	• 허용용도 이외의 건축물 • 지하층 주거용도
		건폐율	• 60% 이하	
		용적률	• 200% 이하	
		높 이	• 4층 이하 (단, 1층 전부를 피로티 구조로 하여 주차장으로 사용할 경우 5층까지 허용)	
		획지당 세대수	8세대 이하(획지의 분할 또는 합병의 경우 변경된 획지를 기준) 단, 540㎡이상인 획지에 대해서는 최소획지면적을 기준으로 획지수 산정하여 세대수 적용	
		배치 및 건축선	• 도로변 건축한계선 1m지정	
		외관 및 형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 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붕형태는 경사지붕 설치를 원칙으로 함 - 경사지붕은 건축물 지붕면적의 70%이상을 경사지붕으로 설치 - 경사지붕의 설치시 구배는 3/10 ~ 7/10 - 경사지붕 설치시 옥상의 설비기기 등 경관불량요소는 건축물 전면에서 보이지 않도록 설치 • 담 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블록 외곽도로에 면한 단지경계부에 단지의 관리와 안전을 위해 투시형이나 생울타리 담장으로 1.2m이하 설치 • 대지를 기준으로 북쪽에 도로가 면해 있을 경우 설비배관 설치는 측면벽을 이용 (권장) 	

■ 준주거용지(C-1)

도면 번호	위치	구분	계 획 내 용	
C-1	C-1	용 도	허용	• 불허되는 용도이외의 용도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및 인천광역시도시계획 조례적용)
			불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택(주상복합제외) • 의료시설 중 격리병원 • 장례식장 • 공장, 창고시설,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단, 주유소, 액화가스충전소 제외) • 자동차 관련시설(주차장, 세차장 제외) • 동물·식물관련시설(식물관련시설 제외) • 교육환경보호구역 제한용도(교육환경보호구역에 한함)
		건폐율	• 60% 이하	
		용적률	• 300% 이하	

		높이	• 4층 이하
		배치 및 건축선	• 20m도로변 건축한계선 2m지정
		외관 및 형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이상 간선도로에 접한 건축물의 1층 외벽면은 50%이상 투시형 벽면을 사용, 셔터 설치시 투시형 셔터를 설치 • 보행자 도로와 접한 건축물의 1층 바닥 마감높이와 도로 마감 높이와 차이는 15cm이하로 하여 보행자 접근성 제고

■ 준주거용지(C-2)

도면 번호	위치	구분	계 획 내 용	
C-2	C-2	용도	허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1종근린생활시설, 제2종근린생활시설 용도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및 인천광역시 도시계획조례 적용)
			불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 주택(주상복합 제외) • 교육환경보호구역 제한용도(교육환경보호구역에 한함)
		건폐율	• 60% 이하	
		용적률	• 200% 이하	
		높이	• 4층 이하	
		배치 및 건축선	• 20m도로변 건축한계선 2m지정, 15m도로변 건축한계선 1m지정	
		외관 및 형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건축물 전면부 1층 외벽면은 50%이상 투시형 벽면을 사용, 셔터 설치시 투시형 셔터를 설치 • 보행자 도로와 접한 건축물의 1층 바닥 마감높이와 도로 마감 높이와 차이는 15cm이하로 하여 보행자 접근성 제고 	

■ 상업용지(D-1)

도면 번호	위치	구분	계 획 내 용	
D-1	D-1	용도	허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불허용도 이외의 용도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및 인천광역시 도시계획조례 적용)
			불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택(단, 주거용이 9/10이하 타용도 복합시 허용) • 1층 전면 입면처리 불량업종 불허(건축자재, 세탁소, 변전소, 양수장, 정수장, 제조업소, 수리점등) • 의료시설 중 격리병원 • 장례식장 • 자동차관련시설(주차장, 세차장 제외) • 공장, 창고시설,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단, 주유소, 액화가스충전소 제외)
		건폐율	• 70% 이하	
		용적률	• 350% 이하	

	높 이	• 5층 이하
	배치 및 건축선	• 20m도로변 건축한계선 2m지정, 12m도로변 건축한계선 1m지정
	외관 및 형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건축물 전면부 1층 외벽면은 50%이상 투시형 벽면을 사용, 셔터 설치시 투시형 셔터를 설치 • 보행자 도로와 접한 건축물의 1층 바닥 마감높이와 도로 마감 높이와 차이는 15cm이하로 하여 보행자 접근성 제고

■ 상업용지(D-2)

도면 번호	위치	구분	계 획 내 용	
D-2	D-2	용 도	허용	• 불허용도 이외의 용도(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및 인천광역시 도시계획조례 적용)
			불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택(단, 주거용이 9/10이하 타용도 복합시 허용) • 1층 전면 입면처리 불량업종 불허(건축자재, 세탁소, 변전소, 양수장, 정수장, 제조업소, 수리점등) • 의료시설 중 격리병원 • 장례식장 • 자동차관련시설(주차장, 세차장 제외) • 공장, 창고,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단, 주유소, 액화가스충전소 제외)
		건폐율	• 70% 이하	
		용적률	• 350% 이하	
		높 이	• 7층 이하	
		배치 및 건축선	• 20m도로변 건축한계선 2m지정, 12m도로변 건축한계선 1m지정	
		외관 및 형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건축물 전면부 1층 외벽면은 50%이상 투시형 벽면을 사용, 셔터 설치시 투시형 셔터를 설치 • 보행자 도로와 접한 건축물의 1층 바닥 마감높이와 도로 마감 높이와 차이는 15cm이하로 하여 보행자 접근성 제고 	

■ 학교용지(E)

도면 번호	위치	구분	계 획 내 용	
E	E	용 도	허용	• 고등학교이하 각급 학교·설립운영규정에 의한 학교(초등학교, 중학교) 및 그 부속 용도
			불허	• 허용되는 용도이외의 용도
		건폐율	• 40% 이하	
		용적률	• 150% 이하	
		높 이	• 5층 이하	
배치 및 건축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m도로변 건축한계선 2m지정, • 15m도로변, 10m-12m도로(소로1-4, 소로1-8)변 건축한계선 1m지정 			

■ 공공청사용지(F-1)

도면 번호	위치	구분	계 획 내 용	
			허용	불허
F-1	F-1	용 도	허용	• 공공청사(동사무소, 경찰파출소) 및 그 부속용도
			불허	• 허용되는 용도이외의 용도
		건폐율	• 40% 이하	
		용적률	• 200% 이하	
		높 이	• 5층 이하	
		배치 및 건축선	• 20m도로변 건축한계선 2m지정, 17m도로변 건축한계선 1m지정	

■ 공공청사용지(F-2)

도면 번호	위치	구분	계 획 내 용	
			허용	불허
F-2	F-2	용 도	허용	• 공공청사(소방서) 및 그 부속용도
			불허	• 허용되는 용도이외의 용도
		건폐율	• 40% 이하	
		용적률	• 200% 이하	
		높 이	• 5층 이하	
		배치 및 건축선	• 20m 도로변 건축한계선 2m지정, 10m-12m도로(소로1-8)변 건축한계선 1m지정	

■ 문화시설용지(G)

도면 번호	위치	구분	계 획 내 용	
			허용	불허
G	G	용도	허용	• 문화시설 및 그부속용도
			불허	• 허용되는 용도이외의 용도
		건폐율	• 60% 이하	
		용적률	• 200% 이하	
		높이	• 4층 이하	
		배치 및 건축선	• 15m도로변 건축한계선 1m지정	

■ 주차장용지(H)

도면번호	위치	구분	계 획 내 용	
H	H	용 도	허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주차장 1, 2, 6에 한하여 주차장법 제2조 제11호에 따른 주차전용 건축물로서 주차장의 용도 20%미만 허용(단, 안마시술소, 단란주점, 장의사, 총포사, 종교시설, 옥외골프연습장, 운동장, 판매시설, 운수시설, 오피스텔 제외) 주차장 3, 4, 5에 한하여 주차장법 제2조 제11호에 따른 주차전용 건축물 허용 단, 주차장 용도만 가능
			불허	<ul style="list-style-type: none"> 허용되는 용도이외의 용도
		건폐율	<ul style="list-style-type: none"> 주차장 1, 2 : 70% 이하 주차장 3, 4, 5, 6 : 60% 이하 	
		용적률	<ul style="list-style-type: none"> 주차장 1, 2 : 350% 이하 주차장 3, 4, 5, 6 : 200% 이하 	
		높 이	<ul style="list-style-type: none"> 주차장 1, 2 : 7층 이하 주차장 6 : 4층 이하 주차장 3, 4, 5 : 3층 이하 	
		배치 및 건축선	<ul style="list-style-type: none"> 12m도로변 건축한계선 1m지정 	
외관 및 형태	<ul style="list-style-type: none"> 주변 경관을 고려하여 철골 등 조립식 구조 등은 지양 			

※ 관계 법령 개정에 따른 허용용도 분류 및 명칭 변경시 최초 지구단위계획 결정시 결정된 내용을 준수

3) 기타사항에 관한 도시관리계획결정조서 (변경없음)

■ 전면공지, 차량동선 등에 관한 계획

도면번호	제어대상	계 획 내 용
전면공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건축한계선 지정으로 생겨난 공지부분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전면공지는 일반대중의 원활한 통행환경 조성을 목적으로 하며, 상시 개방되는 구조로 조성
차량동선	<ul style="list-style-type: none"> 차량출입 불허구간 	<ul style="list-style-type: none"> 차량출입 불허구간으로 표시된 구간에서의 차량출입은 원칙적으로 불허하며, 부득이한 경우(맹지)에 한하여 허용
대문 및 담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대문 및 담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대문 및 담장 설치시 1m이하의 투시형 담장 또는 생울타리 담장으로 설치
대지내 조경	<ul style="list-style-type: none"> B-1(45BL) 	<ul style="list-style-type: none"> 상가, 진입로 등을 제외한 4방향 부지외곽에 폭4m 이상의 대지내조경 조성(일반대중에게 쾌적한 휴식공간 제공)

※ 단, 공동주택용지(B-2용도) 건축한계선(폭 10m)부분은 대지내 공지로 조성

■ 공동주택용지 개발 밀도에 관한 계획

도면 표시	위 치	계획내용(개발밀도)						비 고
		면적 (㎡)	세대수 (세대)	인 구 (인)	순밀도 (인/ha)	층 수 (층)	용적률 (%)	
B-1	45BL	16,307.7	420 이하	1,058	648인/ha	18층이하	230%이하	2.52인/ 세대
B-2	79BL	26,998.5	418 이하	1,053	390인/ha	15층이하	200%이하	
	80BL	48,332.8	731 이하	1,842	381인/ha			
	81BL	37,990.3	616 이하	1,552	408인/ha			
B-3	74BL	39,650.1	909 이하	2,291	578인/ha	20층이하	230%이하	
	76BL	17,891.5	303 이하	764	427인/ha			
B-4	83	1,859.0	48 이하	121	650인/ha	4층 이하	200%이하	
	84	1,974.9	48 이하	121	612인/ha			
	85	1,984.1	48 이하	121	610인/ha			
계		192,988.9	3,541 이하	8,923				

4. 지형도면: 게재 생략(갖추어 둔 장소의 지형도면과 같음)

○ 토지이음(<http://www.eum.go.kr>)에서 열람 가능

인천광역시서구고시 제2021-89호

주택건설사업계획 변경승인 고시

인천 서구 원당동 검단신도시 AB15-1블록의 주택건설사업에 대하여 『주택법』 제15조(사업계획의 승인)제4항 규정에 따라 사업계획내용을 변경 승인하고 같은 법 제15조제6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1. 5. 10.

인천광역시 서구청장

1. 사업명 : 인천 검단신도시 AB15-1블록 우미린 공동주택 신축
2. 사업주체 : 우미건설(주) (대표 배영한)
3. 사업시행 및 면적규모
 - 가. 위치 : 인천광역시 서구 원당동 검단신도시 AB15-1블록
 - 나. 대지면적 : 65,087㎡
 - 다. 사업규모 : 연면적 199,125.3591㎡ (지하2층~지상29층)
 - 라. 용도 : 공동주택(아파트) 13개동 1,268세대 및 이에 따르는 부대·복리시설
 - 마. 사업비 : 512,342,530천원
4. 사업기간 : 2018. 12. 24. ~ 2022. 01. 17.
5. 변경사항(세부내역 붙임 참조)
 - 가. 실내·외 마감재 변경

- 나. 옥상소화수조 변경
- 다. 필로티 난간 개선
- 라. 부대시설 창호 변경
- 마. 근린생활시설 창호 변경
- 바. 근린생활시설 점자블록 변경
- 사. 문주 변경

6. 주택건설사업계획 변경승인에 따른 의제처리사항

- 건축법 제16조에 따른 건축허가사항 변경허가

붙임 주택건설사업계획 변경내역 세부내역 1부. 끝.

인천 검단신도시 AB15-1블록 주택건설 사업계획 변경승인 내용

□ 주택건설 사업계획승인 현황

- 위 치 : 인천광역시 서구 원당동 검단신도시 택지개발지구 AB15-1블록
- 사업주체 : 우미건설(주)
- 사업규모
 - 대지면적 : 65,087.00m²
 - 세 대 수 : 1268세대
 - 건축면적 : 10,257.3717m²
 - 연 면 적 : 199,125.3591m²
- 추진경위
 - 2018. 11. 01. : 주택건설 사업계획 승인완료
 - 2018. 11. 23. : 인천광역시 건축위원회 구조심의
 - 2018. 11. 21. : 주택건설 사업계획 변경 승인 신청 접수
 - 2018. 12. 06. : 주택건설 사업계획 변경 승인완료
 - 2018. 12. 12. : 주택건설 사업계획 경미한 변경 승인 신청 접수
 - 2018. 12. 17. : 주택건설 사업계획 경미한 변경 승인완료
 - 2019. 04. 09. : 주택건설 사업계획 2차 변경 승인 신청 접수
 - 2019. 04. 25. : 주택건설 사업계획 2차 변경 승인완료
 - 2019. 07. 11. : 주택건설 사업계획 3차 변경 승인 신청 접수
 - 2019. 07. 17. : 주택건설 사업계획 3차 변경 승인완료
 - 2020. 04. 23. : 주택건설 사업계획 4차 변경 승인 신청 접수
 - 2020. 09. 01. : 주택건설 사업계획 4차 변경 승인완료
 - 2021. 03. 24. : 주택건설 사업계획 5차 변경 승인 신청 접수

□ 주택건설 사업계획 변경 신청 내용

구 분		변경 전 (사업계획 4차 변경 완료 '20.09.01)	변경 후 (사업계획 5차 변경 승인신청 '21.03.24)	비 고
1. 대지면적		65,087.00㎡	65,087.00㎡	변경없음
3.연면적	지 상	137,870.7815㎡	137,870.7815㎡	변경없음
	지 하	61,254.5776㎡	61,254.5776㎡	변경없음
	합 계	199,125.3591㎡	199,125.3591㎡	변경없음
4. 건축면적		10,257.3717㎡	10,257.3717㎡	변경없음
5. 건 폐 율		15.76%	15.76%	변경없음
6. 용 적 률		211.8254%	211.8254%	변경없음
7. 세대당 주택면적	공급면적	134,702.8998㎡	134,702.8998㎡	변경없음
	기타공용	6,728.7516㎡	6,728.7516㎡	변경없음
	지하주차장	53,422.6276㎡	53,422.6276㎡	변경없음
	계약면적	194,854.2790㎡	194,854.2790㎡	변경없음
8. 층 수		지하2층 ~ 지상29층	지하2층 ~ 지상29층	변경없음
9. 세 대 수		1268 세대	1268 세대	변경없음
10. 주차대수(근생포함)		1630대 (근생 32대)	1630대 (근생 32대)	변경없음
11. 주택형별		74㎡A, 74㎡B, 84㎡A, 84㎡B	74㎡A, 74㎡B, 84㎡A, 84㎡B	변경없음
12. 동수(주/부)		33동 (17동/16동)	33동 (17동/16동)	변경없음
13. 사업기간 변경		착공 예정일 : 2018년 12월 24일 사용검사 예정일 : 2022년 01월 17일	착공 예정일 : 2018년 12월 24일 사용검사 예정일 : 2022년 01월 17일	변경없음

설 계 변 경 사 항

사업명 : 인천 검단신도시 AB15-1블록 공동주택 신축공사

순번	항목	변경전	변경후	변경사유	비고
1	실내외 재료 마감변경 (아파트)	실내외 재료 마감재 계획 (아파트) - 필로티부분 바닥 마감 : 지정블록 - 필로티부분 벽 마감 : 수성 페인트 - ELEV.홀 1층, 기준층 천장 바탕 : 콘크리트 - ELEV.홀 지하층 천장 마감 : 수성 페인트 - 1층 주현관 벽 마감 : 무늬코트 천정 바탕 : 콘크리트	실내외 재료 마감재 변경 (아파트) - 필로티부분 바닥 마감 : 지정블록+지정석재 - 필로티부분 벽 마감 : 수성 페인트/지정석재/지정뽕칠 - ELEV.홀 1층, 기준층 천장 바탕 : 석고보드 - ELEV.홀 지하층 천장 마감 : AL 천장재 - 1층 주현관 벽 마감 : 지정 타일 천정 바탕 : 석고보드	- 필로티 및 지하층, 1층, 기준층 주현관 및 EV홀 내부 마감 품질 향상	
2	실내외 재료 마감변경 (부대시설)	실내외 재료 마감재 계획 (부대시설) - 외벽 : 콘크리트면처리 / 도장마감(외부수성페인트, 지정뽕칠) - 지붕 : 평지붕(우레탄) - 경로당 지붕 : 조경마감 - 어린이집 지붕 : 우레탄 포장 - 근린생활시설-3,4 지붕 : 조경마감	실내외 재료 마감재 변경 (부대시설) - 외벽 : 콘크리트 면처리 / 석재마감 / 도장마감(외부수성페인트, 지정뽕칠) - 지붕 : 평지붕(조경마감 / 우레탄) - 경로당 지붕 : 조경 마감 (단면오기 수정) - 어린이집 지붕 : 조경마감 - 근린생활시설-3,4 지붕 : 조경마감 선형개선	- 품질 향상을 위한 석재마감 추가 및 유지보수 관리를 위한 지붕 마감 개선	
3	옥상 소화수조	옥상 소화수조 계획 - 1504동 소화수조 : 철근콘크리트조 - 1511동 소화수조 : 철근콘크리트조	옥상 소화수조 개선 - 1504동 소화수조 : SMC물탱크 - 1511동 소화수조 : SMC물탱크	- 유지관리 향상	
4	필로티 난간 개선	필로티 난간 계획 - 1510동 필로티 난간 : 콘크리트턱 (H:300) + 투시형 안전난간(H:1,200)	필로티 난간 개선 - 1510동 필로티 난간 : 콘크리트 난간(H:1,200)	- 안전을 고려한 콘크리트 난간으로 변경	
5	1층 동출입구 도어 개선	1501동, 1502동 1층 필로티 부출입구 계획 - 1501동 지상1층 코아#1 FSSD : 1300 x 2300 (W:1300 도어) - 1502동 지상1층 코아#1 FSSD : 1300 x 2300 (W:1300 도어)	1501동, 1502동 1층 필로티 부출입구 도어 개선 - 1501동 지상1층 코아#1 FSSD : 1300 x 2300 (W:1100 도어 + 200 FIX창으로 분할) - 1502동 지상1층 코아#1 FSSD : 1300 x 2300 (W:1100 도어 + 200 FIX창으로 분할)	- 적정 개구부사이즈 확보를 통한 제연성능 향상 및 안전성 확보	

설 계 변 경 사 항

사업명 : 인천 검단신도시 AB15-1블록 공동주택 신축공사

순번	항목	변경전	변경후	변경사유	비고
6	부대시설 창호 변경	부대시설 창호 계획 - 작은도서관 : AW 3,000 x 2,100 (3분할) 계획 - 실내체육관 방풍실 출입구 : FSSD 3,480 x 2,700 - 피트니스센터 코아 : 지하1층 AW 2,700 x 2,400 지상1층 AW 2,700 x 1,800 - 피트니스센터 외부계단 (지상1층) : AD 2,030 x 2,400 - 관리사무소 : 방재실 FAW 1,200 x 900 - 게스트하우스-2 : 실외기실 AGD 1,000 x 2,800 - 입주민회의실-1 : 실외기실 AGD 1,200 x 2,500 - 경로당 : 현관 WD 2,000 x 2,200 (2분할) 미세기문 계획	부대시설 창호 변경 - 작은도서관 : AW 3,000 x 2,100 (4분할) 적용 - 실내체육관 방풍실 출입구 : FSSD 3,000 x 2,700 - 피트니스센터 코아 : AW 2,700 x 6,850 수직창 (스펜드럴 백페인트 글라스적용) - 피트니스센터 외부계단 (지상1층) : AD 2,030 x 2,700 - 관리사무소 : 방재실 FAW 1,000 x 900 - 게스트하우스-2 : 실외기실 AGD 900 x 2,800 - 입주민회의실-1 : 실외기실 AGD 1,050 x 2,500 - 경로당 : 현관 WD 1,800 x 2,200 (3분할) 미서기문 추가	- 외부 디자인 고려한 창호변경 - 방화유리 성능 고려 및 안전선 향상을 위한 FIX창 폭 조정 - 계단실 내부환경 개선 및 외부 디자인을 고려한 수직창 적용 - 외부 디자인 고려한 창호변경 - 방재실 망입유리 안전성 향상 - 외벽 석재 마감 고려하여 창호폭 축소 - 외벽 석재 마감 고려하여 창호폭 축소 - 경로당 현관 내 가구(신발장) 배치 및 유효폭 900확보 위한 창호분할 변경	
7	부대시설 외부 마감재 개선	부대시설 외부마감재 계획 - 작은도서관 정면도 : 지정석재 + 지정시트 + 지정타일 - 피트니스센터 코아 정면도 : 지정석재 - 관리사무소, 게스트하우스, 입주민회의실 입면도 : 지정석재 + 지정시트(인방하부) 측면도 : 지정석재 + 지정도장 - 경로당 정면도 : 지정석재 + 지정타일 - 주민카페 정면도 : 지정석재 측면도 : 지정석재 - 어린이집 정면도 : 지정석재 + 지정도장 우측면도 : 지정석재 + 지정도장 좌측면도 : 지정석재 + 지정도장 + 지정타일 배면도 : 지정도장 + 지정타일 + 지정시트	부대시설 외부마감재 개선 - 작은도서관 정면도 : 지정석재 - 피트니스센터 코아 정면도 : 지정석재 + 테라코타 + AL 절곡판 - 관리사무소, 게스트하우스, 입주민회의실 입면도 : 지정석재 + 지정시트(출입구) 측면도 : 지정석재 + 지정시트 - 경로당 정면도 : 지정석재 - 주민카페 정면도 : 치장벽돌 + AL절곡판 + 지정시트 측면도 : 치장벽돌 + 지정시트 - 어린이집 정면도 : 지정석재 우측면도 : 지정석재 좌측면도 : 지정석재 + 테라코타 배면도 : 지정석재 + 테라코타 + AL 절곡판	- 부대시설 외부 마 감재 개선으로 디 자인 향상	

설 계 변 경 사 항

사업명 : 인천 검단신도시 AB15-1블록 공동주택 신축공사

순번	항목	변경전	변경후	변경사유	비고
8	근린생활 시설 외부 마감재 개선	근린생활시설 외부마감재 계획 - 근린생활시설-1 외벽 : 지정석재+지정타일 +지정시트 - 근린생활시설-2 외벽 : 지정석재+지정타일 +지정시트 - 근린생활시설-3 외벽 : 지정석재+지정타일 +지정시트 - 근린생활시설-4 외벽 : 지정석재+지정타일 +지정시트	근린생활시설 외부마감재 개선 - 근린생활시설-1 외벽 : 지정석재+지정시트 - 근린생활시설-2 외벽 : 지정석재+지정시트 - 근린생활시설-3 외벽 : 지정석재+지정시트 - 근린생활시설-4 외벽 : 지정석재+지정시트	- 근린생활시설 외부 마감재 개선으로 디자인 향상	
9	근린생활 시설 복도창호 추가	근린생활시설-3,4 2층 복도 계획 - 근린생활시설-3 : 2층 복도 개방형 난간 : 콘크리트(H:650) + 투시형(H:550) - 근린생활시설-4 : 2층 복도 개방형 난간 : 콘크리트(H:650) + 투시형(H:550)	근린생활시설-3,4 2층 복도 개선 - 근린생활시설-3 : 2층 복도 창호 추가설치 난간 : 콘크리트(H:650) + AW (H:2,100) - 근린생활시설-4 : 2층 복도 창호 추가설치 난간 : 콘크리트(H:650) + AW (H:2,100)	- 근린생활시설-3, 4 실내환경 개선을 위한 창호 추가	
10	근린생활 시설 점자블록 변경	근린생활시설 점자블록 계획 - 근린생활시설-2 지하1층 전·후면출입구 점자블록 계획 - 근린생활시설-3, 4 지상1층 전·후면출입구 점자블록 계획 - 근린생활시설-3, 4 지상2층 출입구에 점자블록 계획	근린생활시설 점자블록 변경 - 근린생활시설-2 지하1층 전면출입구에만 점자블록 설치 (후면출입구 점자블록 삭제) - 근린생활시설-3, 4 지상1층 전면출입구에만 점자블록 설치 (후면출입구 점자블록 삭제) - 근린생활시설-3, 4 지상2층 출입구에 점자블록 삭제	-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1에 따른 점자블록 표기 수정	
11	문주 사이즈 보완	주/부출입구 문주 계획 - 주문주 : L 24,500 x W 1,000 x H 6,850 - 부문주 : L 26,000 x W 1,000 x H 6,850	주/부 출입구 문주 개선 - 주문주 : L 23,800 x W 5,200 x H 8,050 - 부문주 : L 26,000 x W 5,200 x H 8,050	- 문주 디자인 개선으로 인한 인지성 향상	

인천광역시서구청시 제2021-90호

도시관리계획(검단1지구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도시관리계획(검단1지구 지구단위계획)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법률 제3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에 따라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하고, 같은 법 제32조와 토지이용규제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관계도서는 인천광역시서구청 도시기획담당관(☎032-560-5772)에 비치하고 일반인에게 보입니다.

2021. 5. 10.

인천광역시 서구청장

1. 결정(변경) 취지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 제4호 마목의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2. 위치

- 인천광역시 서구 금곡동, 마전동 일원

3. 도시관리계획(검단1지구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조서

가. 검단1지구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 조서(변경없음)

구분	구역명	위 치	면 적 (㎡)			비 고
			기정	변경	변경후	
기 정	검단1지구	서구 금곡동, 마전동일원	406,679.0	-	406,679.0	토지구획정리사업

나. 용도지역·용도지구의 세분 및 세분된 용도지역·용도지구간의 변경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 조서(변경없음)

1) 용도지역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 조서

구 분		면 적 (㎡)			구성비 (%)	비 고
		기정	변경	변경후		
계		406,679.0	-	406,679.0	100.0	
주 거 지 역	제1종 일반주거지역	79,003.9	-	79,003.9	19.4	
	제2종 일반주거지역	249,354.1	-	249,354.1	61.3	
	제3종 일반주거지역	41,216.0	-	41,216.0	10.2	
준 주 거 지 역		25,105.0	-	25,105.0	6.2	
일 반 상 업 지 역		12,000.0	-	12,000.0	2.9	

2) 용도지구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 조서 : 해당사항 없음

다. 기반시설의 배치와 규모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 조서(변경없음)

1) 기반시설에 관한 결정 조서

가) 도로

■ 도로 총괄표

유 별	합 계			1 류			2 류			3 류					
	노 선 수	연 장 (m)	면 적 (㎡)	노 선 수	연 장 (m)	면 적 (㎡)	노 선 수	연 장 (m)	면 적 (㎡)	노 선 수	연 장 (m)	면 적 (㎡)	노 선 수	연 장 (m)	면 적 (㎡)
합계	51	7,981	68,426.8	5	887	8,870.0	29	5,431	43,934.0	17	1,663	11,882.6	-	-	3,740.2
대로	2	162	422.0	-	-	-	-	-	-	2	162	379.0	-	-	43.0
중로	4	502	6,321.9	-	-	-	1	66	990.0	3	436	5,232.0	-	-	99.9
소로	45	7,317	61,682.9	5	887	8,870.0	28	5,365	42,944.0	12	1,065	6,271.6	-	-	3,597.3

■ 도로 결정 조서

구분	구 모				기 능	연장 (m)	기 점	종 점	사용 형태	주 요 경과지	최 초 결정일	비 고
	등급	류별	번호	폭원 (m)								
기정	대로	3	58	3.5 (25~28.5)	보조간 선도로	82 (8,510)	동측 지구계	광로 3-23호선	일반 도로		2000. 10.16	버스정차대 포함
기정	대로	3	61	3.5 (25~28.5)	〃	80 (4,420)	광로 3-23호선	대로 3-59호선	〃		1999. 6.17	버스정차대 포함
기정	중로	2	228	15	〃	66	대로 3-61호선	중로 3-79호선	〃		〃	
기정	중로	3	79	12	〃	262	중로 2-228호선	마전동 899-4	〃		〃	
기정	중로	3	80	12	〃	36	대로 3-61호선	소로 2-12호선	〃		1999. 6.17	
기정	중로	3	171	12	〃	138	대로 3-61호선	소로 1-1호선	〃		〃	
기정	소로	1	1	10	국지 도로	262	중로 3-171호선	중로 3-79호선	〃		〃	
기정	소로	1	2	10	〃	123	대로 3-58호선	소로 2-21호선	〃		〃	
기정	소로	1	3	10~13	〃	280	대로 3-58호선	소로 2-19호선	〃		〃	
기정	소로	1	4	10	국지 도로	55	중로 1-115호선	소로 3-16호선	일반 도로		1999. 6.17	
기정	소로	1	5	10	〃	167	소로 2-12호선	소로 2-9호선	〃		〃	
기정	소로	2	1	8	〃	230	대로 3-61호선	소로 2-4호선	〃		〃	
기정	소로	2	2	8	〃	156	중로 3-171호선	소로 2-1호선	〃		〃	
기정	소로	2	3	8	〃	151	소로 1-1호선	소로 2-23호선	〃		〃	
기정	소로	2	4	8	〃	311	중로 2-218호선	소로 1-1호선	〃		〃	

※ ()은 지구 외 사항임

구분	구 모				기 능	연장 (m)	기 점	종 점	사용 형태	주 요 경과지	최 초 결정일	비 고
	등급	류별	번호	폭원(m)								
기정	소로	2	5	8	〃	320	소로 2-12호선	소로 2-5호선	〃		〃	
기정	소로	2	6	8	〃	18	중로 3-79호선	소로 2-5호선	〃		〃	
기정	소로	2	7	8	〃	38	소로 1-5호선	소로 2-5호선	〃		〃	
기정	소로	2	9	8	〃	173	중로 3-79호선	소로 2-21호선	〃		〃	
기정	소로	2	10	8	〃	112	소로 2-9호선	소로 2-24호선	〃		〃	
기정	소로	2	11	8	〃	299	소로 1-5호선	소로 2-5호선	〃		〃	
기정	소로	2	12	8	〃	379	소로 1-5호선	소로 2-5호선	〃		〃	
기정	소로	2	13	8	〃	40	대로 3-61호선	소로 2-12호선	〃		〃	
기정	소로	2	14	8	〃	121	대로 3-58호선	소로 1-2호선	〃		1995. 11.17	
기정	소로	2	15	8	〃	260	소로 1-2호선	소로 1-3호선	〃		〃	
기정	소로	2	16	8	〃	250	소로 1-2호선	소로 1-3호선	〃		〃	
기정	소로	2	17	8	〃	103	소로 1-2호선	소로 2-18호선	〃		〃	
기정	소로	2	18	8	〃	161	소로 2-16호선	소로 2-21호선	〃		〃	
기정	소로	2	19	8	〃	249	소로 2-18호선	소로 2-21호선	〃		〃	
기정	소로	2	20	8	〃	145	소로 2-21호선	소로 2-19호선	〃		〃	
기정	소로	2	21	8	〃	648	소로 1-2호선	마전동 1046	〃		〃	
기정	소로	2	22	8	〃	166	소로 1-3호선	소로 2-21호선	〃		〃	

구분	구 모				기 능	연장 (m)	기 점	종 점	사용 형태	주 요 경과지	최 초 결정일	비 고
	등급	류별	번호	폭원(m)								
기정	소로	2	23	8	〃	157	소로 2-1호선	소로 2-3호선	〃		〃	
기정	소로	2	24	8	〃	149	소로 2-11호선	소로 2-10호선	〃		〃	
기정	소로	2	25	8	〃	290	소로 2-11호선	마전동 1032	〃		〃	
기정	소로	2	26	8	국지 도로	36	소로 2-25호선	소로 2-11호선	일반 도로		1999. 6.17	
기정	소로	2	27	8	〃	35	대로 3-58호선	소로 2-15호선	〃		〃	
기정	소로	2	28	8	〃	250	소로 2-15호선	소로 2-15호선	〃		〃	
기정	소로	2	29	8	〃	118	중로 2-218호선	소로 2-1호선	〃		2000. 10.16	
기정	소로	3	9	6	〃	59	소로 2-12호선	소로 3-11호선	〃		1999. 6.17	
기정	소로	3	10	6	〃	113	소로 2-14호선	소로 3-9호선	〃		〃	
기정	소로	3	11	6	〃	173	소로 1-2호선	소로 2-12호선	〃		〃	
기정	소로	3	12	6	〃	37	소로 2-11호선	소로 2-21호선	〃		〃	
기정	소로	3	15	6	〃	138	소로 2-22호선	소로 3-16호선	〃		〃	
기정	소로	3	16	6	〃	232	소로 1-4호선	소로 2-21호선	〃		〃	
기정	소로	3	17	6	〃	117	소로 2-22호선	소로 3-16호선	〃		〃	
기정	소로	3	18	6	〃	38	중로 1-115호선	소로 3-16호선	〃		〃	
기정	소로	3	19	6	〃	74	소로 2-22호선	소로 3-16호선	〃		〃	
기정	소로	3	23	5	〃	28	소로 3-20호선	소로 2-12호선	〃		-	
기정	소로	3	20	5	특수 도로	21	대로 3-58호선	소로 3-23	보행자 전용 도로		1999. 6.17	
기정	소로	3	22	4	〃	35	대로 3-58호선	소로 2-15호선	“		〃	

나) 주차장

■ 주차장 결정 조서

구분	도면 표시 번호	시설명	시설의세분	위 치	면 적(㎡)			최 초 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기정	1	주차장	노외주차장	마전동 908- 3	2,589.4	-	2,589.4	'99. 6.17	
기정	2	주차장	노외주차장	마전동 928-16	1,037.7	-	1,037.7	'99. 6.17	
	계		2개소		3,627.1	-	3,627.1		

다) 공원

■ 공원 결정 조서

구분	도면 표시 번호	공원명	시설의세분	위 치	면 적(㎡)			최 초 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기정	26	금곡공원	어린이공원	금곡동 727-8	3,753.7	-	3,753.7	'95.11.17	
기정	27	마전제1공원	어린이공원	마전동 907	4,606.2	-	4,606.2	'95.11.17	
기정	28	마전제6공원	어린이공원	마전동 929-1	2,662.5	-	2,662.5	'95.11.17	
기정	29	마전제5공원	어린이공원	마전동 906	4,048.0	-	4,048.0	'95.11.17	
	계		4개소		15,070.4	-	15,070.4		

라) 녹지

■ 녹지 결정 조서

구분	도면 표시 번호	시설명	시설의세분	위 치	면 적(㎡)			최 초 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기정	1	녹 지	완충녹지	마전동 922-1	199.8	-	199.8	'99. 6.17	
기정	2	녹 지	완충녹지	마전동 926-2	190.1	-	190.1	'99. 6.17	
기정	3	녹 지	완충녹지	금곡동 722-1	409.0	-	409.0	'00.10.16	
	계		3개소		798.9	-	798.9		

마) 학교

■ 학교 결정 조서

구분	도면 표시 번호	시설명	시설의 세분	위 치	면 적(㎡)			최 초 결정일	비 고
					기정	변경	변경후		
기정	2	학 교	초등학교	금곡동 721-1,721-2	12,930.2	-	12,930.2	'95.11.17	
기정	3	학 교	중 학 교	마전동 908-1,908-2	19,471.9	-	19,471.9	'95.11.17	
	계		2개소		32,402.1	-	32,402.1		

바) 공공청사

■ 공공청사 결정 조서

구분	도면 표시 번호	시설명	시설의 세분	위 치	면 적(㎡)			최 초 결정일	비 고
					기정	변경	변경후		
기정	D-4	공공청사	동사무소	마전동 927-4	3,572.1	-	3,572.1	2006.5.15	
기정	D-5	공공청사	보건소	금곡동 729-14, 729-17	-	증)331.0	331.0	2016.8.01	
	계		2개소		3,572.1	증)331.0	3,903.1		

사) 체육시설

■ 체육시설 결정 조서

구분	도면 표시 번호	시설명	시설의 세분	위 치	면 적(㎡)			최 초 결정일	비 고
					기정	변경	변경후		
기정	1	체육시설	다목적체육관	마전동 905-6, -7	-	증)1,265.3	1,265.3	2020.5.25	
	계		1개소		-	증)1,265.3	1,265.3		

라. 가구 및 획지의 규모와 조성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조서

1) 단독주택용지(A-1용도)(변경)

■ 결정(변경) 조서

도면 표시	가 구 번 호	면 적 (㎡)	기 정			도면 표시	가 구 번 호	면 적 (㎡)	변 경		
			획 지		분할가능 획지수				획 지		분할가능 획지수
			위 치	면 적(㎡)					위 치	면 적(㎡)	
A-1	3	7,808.9	1-1	350.9	-	A-1	3	7,808.9	1-1	350.9	-
			1-2	350.8	-				1-2	350.8	-
			2	147.8	-				2	147.8	-
			3	143.4					3	143.4	
			4	253.2	-				4	253.2	-
			5	43.7	-				5	43.7	-
			6	274.9	-				6	274.9	-
			7-1	264.6	-				7-1	264.6	-
			7-2	529.0	-				7-2	529.0	-
			7-3-1	462.7	-				7-3-1	462.7	-
			7-3-2	518.3	-				7-3-2	518.3	-
			7-4-1	257.8	-				7-4-1	257.8	-
			7-4-2	257.8	-				7-4-2	257.8	-
			7-4-3	257.7	-				7-4-3	257.7	-
	8	360.0	-	8	360.0	-					
	9-1	213.6	-	9-1	213.6	-					
	9-2	285.0	-	9-2	285.0	-					
	10-1	477.2	-	10-1	477.2	-					
	10-2	477.0	-	10-2	477.0	-					
	11	247.4	-	11	247.4	-					
	12	153.3	-	12	153.3	-					
	13-1	248.9	-	13-1	248.9	-					
	13-2	248.8	-	13-2	248.8	-					
	14-1	328.3	-	14-1	328.3	-					
	14-2	328.4	-	14-2	328.4	-					
	14-3	328.4	-	14-3	328.4	-					
	4	2,047.6	1-1	268.0	-	4	4	2,047.6	1-1	268.0	-
			1-2	267.9	-				1-2	267.9	-
1-3			266.1	-	1-3				266.1	-	
2-1			220.5	-	2-1				220.5	-	
2-2			221.4	-	2-2				221.4	-	
2-3			211.2	-	2-3				211.2	-	
2-4			211.0	-	2-4				211.0	-	
3			381.5	-	3				381.5	-	

기 정						변 경					
도면 표시	가 구 번 호	면 적 (㎡)	획 지		분할가능 획지수	도면 표시	가 구 번 호	면 적 (㎡)	획 지		분할가능 획지수
			위 치	면 적(㎡)					위 치	면 적(㎡)	
A-1	5	5,752.0	1-1	348.1	-	A-1	5	5,752.0	1-1	348.1	-
			1-2	425.0	-				1-2	425.0	-
			1-3	191.1	-				1-3	191.1	-
			2-1-1	264.6	-				2-1-1	264.6	-
			2-1-2	264.5	-				2-1-2	264.5	-
			2-2	328.0	-				2-2	328.0	-
			2-3	227.4	-				2-3	227.4	-
			2-4	227.0	-				2-4	227.0	-
			4-1	197.2	-				4-1	197.2	-
			4-2	310.7	-				4-2	310.7	-
			5	283.8	-				5	283.8	-
			6-1	270.6	-				6-1	270.6	-
			6-2	270.5	-				6-2	270.5	-
			7-1	419.4	-				7-1	419.4	-
			7-2	391.0	-				7-2	391.0	-
			8	302.7	-				8	302.7	-
			9	279.2	-				9	279.2	-
	10	435.7	-	10	435.7	-					
	11	315.5	-	11	315.5	-					
	10	2,562.1	1	72.4	-	A-1	10	2,562.1	1	72.4	-
			2-1	342.8	-				2-1	342.8	-
			2-2	465.4	-				2-2	465.4	-
			2-3	465.4	-				2-3	465.4	-
			3	407.3	-				3	407.3	-
			4-1	341.0	-				4-1	341.0	-
			4-2	467.8	-				4-2	467.8	-
	11	2,985.4	1-1-1	396.6	-	11	2,985.4	1-1-1	396.6	-	
			1-1-2	397.1	-			1-1-2	397.1	-	
			1-2	397.8	-			1-2	397.8	-	
			1-3	330.0	-			1-3	330.0	-	
			2	232.3	-			2	232.3	-	
			3	382.7	-			3	382.7	-	
			4-1	324.6	-			4-1	324.6	-	
4-2			282.6	-	4-2			282.6	-		
4-3	241.7	-	4-3	241.7	-						
12	1,920.9	1-1	232.8	-	12	1,450.5	1-1	232.8	-		
		1-2	259.1	-			1-2	259.1	-		
		1-3	437.1	-			1-3	437.1	-		
		2	470.4	-			-	-	-		
		3	257.9	-			3	257.9	-		
		4	51.1	-			4	51.1	-		
		5	177.1	-			5	177.1	-		
		8	35.4	-			8	35.4	-		

기 정						변 경					
도면 표시	가 구 번 호	면 적 (㎡)	획 지		분할가능 획지수	도면 표시	가 구 번 호	면 적 (㎡)	획 지		분할가능 획지수
			위 치	면 적(㎡)					위 치	면 적(㎡)	
A-1	13	2,265.9	1-1	342.8		13	2,265.9	1-1	342.8		
			1-2	348.1				1-2	348.1		
			2	272.3				2	272.3		
			3-1	287.2				3-1	287.2		
			3-2	287.6				3-2	287.6		
			4	304.7				4	304.7		
			5	205.7				5	205.7		
			6	217.5				6	217.5		
	15	1,887.3	1	437.7	-	15	1,887.3	1	437.7	-	
			2-1	281.6	-			2-1	281.6	-	
			2-2	281.6	-			2-2	281.6	-	
			3-1	518.9	-			3-1	518.9	-	
			3-2	326.3	-			3-2	326.3	-	
			4	41.2	-			4	41.2	-	
	16	1,238.8	2	1,100.0	-	16	1,238.8	2	1,100.0	-	
			4	138.8	-			4	138.8	-	
	17	1,900.3	1	367.0	-	17	1,900.3	1	367.0	-	
			2	231.6	-			2	231.6	-	
			3	200.0	-			3	200.0	-	
			4	374.2	-			4	374.2	-	
			5-1	222.1	-			5-1	222.1	-	
			5-2	273.1	-			5-2	273.1	-	
			5-3	232.3	-			5-3	232.3	-	
	18	3,602.4	1-1	279.7		A-1	18	3,602.4	1-1	279.7	
			1-2	279.7					1-2	279.7	
			1-3	279.8					1-3	279.8	
			1-4	325.4					1-4	325.4	
			1-5	311.1					1-5	311.1	
			1-6	294.6					1-6	294.6	
			1-7	294.5					1-7	294.5	
			1-8	278.3					1-8	278.3	
			2-1	303.8					2-1	303.8	
			2-2	303.9					2-2	303.9	
			2-3-1	275.6					2-3-1	275.6	
			2-3-2	376.0					2-3-2	376.0	
			20	5,022.6	1				268.1	-	20
2	1,522.4	-			2	1,522.4	-				
3	264.1	-			3	264.1	-				
4-1	286.1	-			4-1	286.1	-				
4-2	222.8	-			4-2	222.8	-				
6-1	249.0	-			6-1	249.0	-				

기 정						변 경					
도면 표시	가 구 번 호	면 적 (㎡)	획 지		분할가능 획지수	도면 표시	가 구 번 호	면 적 (㎡)	획 지		분할가능 획지수
			위 치	면 적(㎡)					위 치	면 적(㎡)	
			6-2	263.2	-				6-2	263.2	-
			7	244.5	-				7	244.5	-
			8	496.1	-				8	496.1	-
			9	312.4	-				9	312.4	-
			10-1	366.7	-				10-1	366.7	-
			10-2	196.3	-				10-2	196.3	-
			11	330.9	-				11	330.9	-
A-1	21	3,997.4	1-1	258.7	-	A-1	21	3,997.4	1-1	258.7	-
			1-2	258.6	-				1-2	258.6	-
			1-3	258.7	-				1-3	258.7	-
			2-1	236.1	-				2-1	236.1	-
			2-2	236.0	-				2-2	236.0	-
			2-3	237.0	-				2-3	237.0	-
			3-1	271.7	-				3-1	271.7	-
			3-2	272.0	-				3-2	272.0	-
			4	223.1	-				4	223.1	-
			5-1	271.6	-				5-1	271.6	-
			5-2	271.5	-				5-2	271.5	-
			5-3	271.7	-				5-3	271.7	-
			6-1	371.5	-				6-1	371.5	-
			6-2	330.5	-				6-2	330.5	-
			7	228.7	-				7	228.7	-
A-1	22	2,136.2	1	500.9	-	A-1	22	2,136.2	1	500.9	-
			2	231.2	-				2	231.2	-
			3	1018.9	-				3	1018.9	-
			4	248.7	-				4	248.7	-
			5	136.5	-				5	136.5	-
A-1	23	3,152.3	1-1	329.4	-	A-1	23	3,152.3	1-1	329.4	-
			1-2	329.4	-				1-2	329.4	-
			1-3	289.3	-				1-3	289.3	-
			2	220.5	-				2	220.5	-
			3	317.4	-				3	317.4	-
			4	238.3	-				4	238.3	-
			5	176.2	-				5	176.2	-
			6	121.0	-				6	121.0	-
			7	187.9	-				7	187.9	-
			8-1	268.3	-				8-1	268.3	-
			8-2	277.6	-				8-2	277.6	-
			8-3	397.0	-				8-3	397.0	-

■ 변경 사유서

변경내용	변경사유
○ 가구 면적 및 획지계획 변경 - 가구 면적 변경(1,920.9㎡→1,450.5㎡, 감:470.4㎡) - 12번 가구 2번 획지 제척	○ 기존 단독주택용지(12-2)내 어린이집 신설에 따른 주택용지(A-1용도) 가구 면적 및 획지계획 변경

2) 단독주택용지(A-2용도)(변경없음)

도면 표시	가구 번호	면 적 (㎡)	획 지		분할가능 획 지 수
			위 치	면 적(㎡)	
A-2	2	1,318.5	3	660.9	-
			4	657.6	-
	6	3,959.5	1	165.3	-
			3	109.9	-
			4	711.4	-
			5	878.4	-
			6	1,085.0	-
			7-1	336.4	-
			7-2	336.4	-
			7-3	336.7	-
	28	1,797.4	3	395.1	-
			4	566.9	-
			5	835.4	-
	30	3,532.2	1	154.4	-
			2	772.5	-
			3	194.1	-
			4	195.2	-
			5	314.9	-
			7	151.4	-
			8	147.6	-
			9	236.5	-
			10	174.1	-
			11	157.5	-
			12	251.8	-
			13	181.2	-
			14	280.8	-
			16	320.2	-
	A-2	37	6,004.3	1	242.8
2				182.6	-
3				357.1	-
4				298.8	-

도면 표시	가구 번호	면 적 (㎡)	획 지		분할가능 획 지 수		
			위 치	면 적(㎡)			
			5	260.2	-		
			6	269.0	-		
			7	255.2	-		
			8	1,100.2	-		
			9	238.0	-		
			10	328.5	-		
			11	321.3	-		
			12	390.4	-		
			13	267.9	-		
			14	273.3	-		
			15	257.3	-		
			16	280.1	-		
			17	300.6	-		
			18	381.0	-		
			38	4,011.5	1-1	346.7	
					1-2	409.4	
					2	247.2	
					3	356.3	
	4	242.7					
	5	488.4					
	6	272.3					
	7	237.4					
	8	358.5					
	9	637.6					
	10	155.8					
	11	259.2					
	39	3,079.3	1	1,222.0	-		
			2	231.9	-		
			3	477.4	-		
			4	516.9	-		
			5	313.6	-		
			6	210.3	-		
			7	107.2	-		
	40	1,806.6	1	287.6			
			2	183.0			
			3	232.7			
			4	238.6			
			5-1	601.3			
			5-2	263.4			

도면 표시	가구 번호	면 적 (㎡)	획 지		분할가능 획 지 수
			위 치	면 적(㎡)	
A-2	41	3,211.7	1	201.4	-
			2	197.3	-
			3	188.6	-
			4	258.8	-
			5	155.5	-
			6	210.6	-
			6-1	176.7	-
			6-2	235.5	-
			6-3	199.5	-
			6-4	199.4	-
			7	298.3	-
			9	312.2	-
			10	207.2	-
	11	267.2	-		
	12	103.5	-		
	43	689.7	6	689.7	-
	44	4,072.2	1	208.6	-
			2	179.3	-
			3	136.4	-
			4	134.4	-
			5	195.1	-
			13	214.3	-
			14	183.7	-
			16	244.2	-
			17	168.0	-
			18	184.9	-
			19	147.5	-
			20	150.1	-
			21-1-1	263.8	-
			21-1-2	336.7	-
			21-2	327.4	-
			22	659.6	-
	23	338.2	-		

3) 공동주택용지(B-1용도)(변경없음)

도면 표시	가 구 번호	면 적 (㎡)	획 지		분할가능 획지수
			위치	면적(㎡)	
B-1	36	2,201.5	1	440.0	-
			2	284.2	
			3	414.9	
			4	501.0	
			7	437.9	
			8	123.5	
	44	2,532.1	24	139.4	-
			36	209.1	-
			37	238.0	-
			38	594.7	-
			39	350.3	-
			40	837.1	-
			43	163.5	-

4) 공동주택용지(B-2용도)(변경없음)

도면 표시	가 구 번호	면 적 (㎡)	필 지		분할가능 획지수
			위치	면적(㎡)	
B-2	7	16,488.4	727-1	5,096.4	공동건축지정
			727-2	3,648.4	
			727-3	1,110.3	
			727-4	3,067.9	
			727-5	682.3	
			727-6	1,852.9	
			727-7	338.0	
			727-9	692.2	
	27	9,331.0	1	9,331.0	
	28	14,026.4	1	10,260.0	
			2	3,766.4	
	29	12,115.6	1	12,115.6	
	42	4,802.8	1	4,802.8	
	43	7,726.0	1	3,998.0	
			2	591.9	
			3	3,136.1	
	49	883.0	3	883.0	
	50	4,538.6	1	4,101.0	
			3	437.6	

5) 공동주택용지(B-3용도)(변경없음)

도면 표시	가구 번호	면 적 (㎡)	획 지		분할가능 획지수
			위 치	면적(㎡)	
B-3	44	11,483.1	6	1,348.4	-
			44-1	705.7	-
			44-2	1,096.7	-
			45	470.6	-
			46	1,270.2	-
			47-1	1,818.9	-
			47-2	401.9	-
	25-1	4,370.7	-		
46	4,488.2	2	4,488.2	-	

6) 공동주택용지(B-4용도)(변경없음)

도면 표시	가구 번호	가구면적 (㎡)	획 지		분할가능 획 지 수
			위 치	면 적(㎡)	
B-4	2	11,434.5	2	11,434.5	-
	5	1,723.2	3	1,723.2	-
	6	12,017.2	2	12,017.2	-
	43	11,011.6	5	10,543.8	-
			7	467.8	-
	49	5,213.5	1	4,636.2	-
			4	577.3	-

7) 공동주택용지(B-5용도)(변경없음)

도면 표시	가 구 번 호	면 적 (㎡)	획 지		분할가능 획지수
			위 치	면 적(㎡)	
B-5	8	31,049.3	1	30,718.3	-

8) 근린생활시설용지(C-1용도)(변경없음)

도면 표시	가 구 번 호	면 적 (㎡)	획 지		분할가능 획지수
			위 치	면 적(㎡)	
C-1	24	4,991.9	1-1	363.8	-
			1-2	670.1	-
			1-3	337.0	-
			2-1	607.6	-
			3	505.7	-
			4	1,218.9	-
			6	286.3	-
			7	551.6	-
			8	450.9	-
	26	3,060.4	1	143.6	-
			2	247.6	-
			3	356.3	-
			4	181.7	-
			5	204.4	-
			6	242.6	-
			7	170.2	-
			8	702.5	-
			10	476.0	-
			11	188.1	-
			12	147.4	-
			31	1,754.3	1
	2	231.3			-
	3	320.7			-
	4	164.1			-
	5	175.4			-
	6	118.9			-
	7	338.8			-
	32	2,469.9	1	178.1	-
			2	225.0	-
			3	230.1	-
			4	293.9	-
			5	166.4	-
			7	136.9	-
			8	301.3	-
			9	91.6	-
			10	228.5	-
11			321.7	-	
12			110.2	-	
13	186.2	-			

도면 표시	가 구 번 호	면 적 (㎡)	획 지		분할가능 획지수
			위치	면 적(㎡)	
C-1	45	3,272.3	1	3,272.3	-
	47	3,289.4	1	831.3	-
			2	982.8	-
			3-1	359.4	-
			3-2	349.7	-
			3-3	766.2	-
	48	2,152.9	1	835.5	-
			2	501.2	-
			3	261.6	-
			4	296.8	-
			5	257.8	-

9) 상업용지(C-2용도)(변경없음)

도면 표시	가 구 번 호	면 적 (㎡)	획 지		분할가능 획지수
			위치	면 적(㎡)	
C-2	33	4,013.6	1	3,046.9	-
			2	234.6	-
			3	143.6	-
			4	141.2	-
			5	160.0	-
			6	287.3	-
	34	2,191.0	1	276.0	-
			2	378.5	-
			3	181.8	-
			4	204.3	-
			5	330.1	-
			6	132.4	-
			7	369.4	-
			8	171.0	-
	35	4,509.9	1	136.4	-
			2	403.3	-
			3	469.3	-
			4	359.4	-
			5	276.4	-
			6	288.1	-
			7	2,225.8	-
			8	351.2	-

10) 종교집회장용지(D-2용도)(변경없음)

도면 표시	가구 번호	가구면적 (㎡)	획 지		분할가능 획지수
			위 치	면 적(㎡)	
D-2	16	2,508.6	1	1,683.5	-
			3	825.1	-
	23	572.9	9	572.9	-

11) 아동관련시설용지(D-3용도)(변경)

■ 결정(변경) 조서

기정						변경					
도면 표시	가구 번호	면적 (㎡)	획 지		분할가능 획지수	도면 표시	가구 번호	면적 (㎡)	획 지		분할가능 획지수
			위 치	면적(㎡)					위 치	면적(㎡)	
D-3	20	1,202.9	5	1,202.9	-	D-3	20	1,202.9	5	1,202.9	-
	36	697.3	5	399.5	-		36	697.3	5	399.5	-
			6	297.8	-				6	297.8	-
	-	-	-	-	-		12	470.4	2	470.4	-

■ 변경 사유서

변경내용	변경사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가구 및 획지계획 변경 - 12번 가구 2번 획지에 어린이집 신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존 단독주택용지(12-2)내 어린이집 신설에 따른 아동관련시설 용지(D-3용도) 가구 및 획지계획 변경

12) 공공업무시설용지(D-4용도)(변경없음)

도면 표시	가구 번호	가구면적 (㎡)	획 지		분할가능 획지수
			위 치	면 적(㎡)	
D-4	43	3,572.1	4	3,572.1	-
D-5	8	331.0	30	331.0	-

13) 주차장용지(E-1용도)(변경없음)

도면 표시	가구 번호	가구면적 (㎡)	획 지		분할가능 획 지 수
			위 치	면 적(㎡)	
E-1	25	2,589.4	3	2,589.4	-
	44	1,037.7	48	1,037.7	

14) 체육시설(D-6용도)(변경없음)

도면 표시	가 구 번호	면 적 (㎡)	획 지		분할가능 획 지 수
			위 치	면 적(㎡)	
D-6	12	1,265.3	6	1,265.3	-

마. 건축물에 대한 용도·건폐율·용적률·높이·배치·형태·색채·건축선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조서

1) 단독주택용지(A-1용도)(변경)

■ 기 정

도면번호	위 치 (가구번호)	구 분	계 획 내 용	
A-1 (단독주택 용지)	3, 4, 5(1-1~2-4,4-1~11), 10, 11, 12(1-1~5,8), 13, 15, 16(2,4), 17, 18, 20(1~4-2,6-1~11), 21, 22, 23(1-1~8-3)	용도	허용용도	○ 별표1 A-1의 허용용도
			불허용도	○ 별표1 A-1의 불허용도
		건 폐 율	○ 60% 이하	
		용 적 률	○ 150% 이하	
		높 이	○ 3층 이하 (단, 1층 전부를 피로티 구조로 하여 주차장으로 사용하는 경우 피로티 부분을 층수에서 제외)	
		형 태	○ 별표3의 단독주택용지	
		배 치	○ 별표2의 단독주택용지	
		색 채	○ 별표6의 색채계획	
건 축 선	○ 별표2의 단독주택용지			

■ 변경

도면번호	위 치 (가구번호)	구 분	계 획 내 용	
A-1 (단독주택 용지)	3, 4, 5(1-1~2-4,4-1~11), 10, 11, 12(1-1~1-3,3~5,8), 13, 15, 16(2,4), 17, 18, 20(1~4-2,6-1~11), 21, 22, 23(1-1~8-3)	용도	허용용도	○ 별표1 A-1의 허용용도
			불허용도	○ 별표1 A-1의 불허용도
		건 폐 율	○ 60% 이하	
		용 적 륜	○ 150% 이하	
		높 이	○ 3층 이하 (단, 1층 전부를 피로티 구조로 하여 주차장으로 사용하는 경우 피로티 부분을 층수에서 제외)	
		형 태	○ 별표3의 단독주택용지	
		배 치	○ 별표2의 단독주택용지	
		색 채	○ 별표6의 색채계획	
		건 축 선	○ 별표2의 단독주택용지	

■ 변경 사유서

변경내용	변경사유
○ 위치(가구번호) 변경 - 12번 가구 2번 획지 제척	○ 기존 단독주택용지(12-2)내 어린이집 신설에 따른 위치(가구번호) 변경

2) 단독주택용지(A-2용도)(변경없음)

도면번호	위 치 (가구번호)	구 분	계 획 내 용	
A-2 (단독주택 용지)	2(3~4), 6(1,3~7-3), 28(3~5), 30(1-16), 37(1~2,4~18), 38(1-1~11), 39(1~7), 40(1~5-2), 41(1-6,6-1~4,7,9~12), 43(6), 44(1~5,13~14, 16~20,21-1-1~2, 22~23)	용도	허용용도	○ 불허용도 이외의 용도
			불허용도	○ 별표1의 A-2의 불허용도
		건 폐 율	○ 60%이하	
		용 적 륜	○ 250%이하	
		높 이	○ 5층이하	
		형 태	○ 별표3의 단독주택용지	
		배 치	○ 별표2의 단독주택용지	
		색 채	○ 별표6의 색채계획	
		건 축 선	○ 25m이상 도로: 3m (환경영향평가협의사항) ○ 15m미만 도로: 1m	

3) 공동주택용지(B-1용도)(변경없음)

도면번호	위 치 (가구번호)	구 분	계 획 내 용	
B-1 (공동주택 용지)	36(1~4, 7, 8) 44(24, 36~40, 43)	용도	허용용도	○ 공동주택 중 다세대주택, 연립주택 및 부대복리시설
			불허용도	○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건 폐 율	○ 60%이하	
		용 적 륜	○ 다세대: 240% 연립: 150% 이하	
		높 이	○ 다세대 및 연립주택: 4층이하 (단, 1층 전부를 피로티 구조로 하여 주차장으로 사용하는 경우 피로티 부분을 층수에서 제외)	
			○ 다세대 평형: 20평, 8가구 / 주차: 8대	
		형 태	○ 별표3의 공동주택용지	
		배 치	○ 별표2의 공동주택용지	
		색 채	○ 별표6의 색채계획	
		건 축 선	○ 별표2의 공동주택용지	

4) 공동주택용지(B-2용도)(변경없음)

도면번호	위 치 (가구번호)	구 분	계 획 내 용	
B-2 (공동주택용지)	7(1~3, 4-1~2, 5~6, 8), 27(1), 28(1~2), 29(1), 42(1), 43(1~3), 49(3), 50(1, 3)	용도	허용용도	○ 저층 APT 및 부대복리시설
			불허용도	○ 별표1의 B-2의 불허용도
		건 폐 율	○ 30%이하	
		용 적 륜	○ 150%이하	
		높 이	○ 5층 이하	
		형 태	○ 별표3의 공동주택용지	
		배 치	○ 별표2의 공동주택용지	
		색 채	○ 별표6의 색채계획	
		건 축 선	○ 별표2의 공동주택용지	

5) 공동주택용지(B-3용도)(변경없음)

도면번호	위 치 (가구번호)	구 분		계 획 내 용
B-3 (공동주택용지)	44(6, 25-1,44-1~2, 45~46, 47-1~2), 46(2)	용도	허용용도	○ 중층 APT 및 부대복리시설
			불허용도	○ 별표1의 B-3의 불허용도
		건 폐 율		○ 30%이하
		용 적 륜		○ 200%이하
		높 이		○ 10층 이하
		형 태		○ 별표3의 공동주택용지
		배 치		○ 별표2의 공동주택용지
		색 채		○ 별표6의 색채계획
		건 축 선		○ 별표2의 공동주택용지

6) 공동주택용지(B-4용도)(변경없음)

도면번호	위 치 (가구번호)	구 분		계 획 내 용
B-4 (공동주택용지)	2(2), 5(3), 6(2), 43(5,7), 49(1,4)	용도	허용용도	○ 고층 APT 및 부대복리시설
			불허용도	○ 별표1의 B-4의 불허용도
		건 폐 율		○ 30%이하
		용 적 륜		○ 230%이하
		높 이		○ 15층 이하
		형 태		○ 별표3의 공동주택용지
		배 치		○ 별표2의 공동주택용지
		색 채		○ 별표6의 색채계획
건 축 선		○ 별표2의 공동주택용지		

7) 공동주택용지(B-5용도)(변경없음)

도면번호	위 치 (가구번호)	구 분	계 획 내 용	
B-5 (공동주택용지)	8(1)	용도	허용용도	○ 고층 APE 및 부대복리시설
			불허용도	○ 별표1의 B-5의 불허용도
		건 폐 율	○ 23%이하	
		용 적 률	○ 200%이하	
		높 이	○ 15층 이하	
		형 태	○ 별표3의 공동주택용지	
		배 치	○ 별표2의 공동주택용지	
		색 채	○ 별표6의 색채계획	
		건 축 선	○ 별표2의 공동주택용지	

8) 근린생활시설용지(C-1용도)(변경없음)

도면번호	위 치 (가구번호)	구 분	계 획 내 용	
C-1 (근린생활 시설용지)	24, 26, 31, 32, 45, 47(3-1~3), 48	용도	허용용도	○ 불허용도 이외의 용도
			불허용도	○ 별표1의 C-1의 불허용도
		건 폐 율	○ 60%이하	
		용 적 률	○ 15m 미만도로 350% 이하 ○ 15m 이상도로 500% 이하	
		높 이	○ 15m 미만도로변 5층 이하 ○ 15m 이상도로변 7층 이하	
		형 태	○ 별표3의 준주거용지	
		배 치	○ 별표2의 준주거용지	
		색 채	○ 별표6의 색채계획	
		건 축 선	○ 별표2의 준주거용지	

9) 상업용지(C-2용도)(변경없음)

도면번호	위 치 (가구번호)	구 분	계 획 내 용	
C-2 (상업용지)	33, 34, 35	용도	허용용도	○ 불허용도 이외의 용도
			불허용도	○ 별표1의 C-2의 불허용도
		건 폐 율	○ 70% 이하	
		용 적 륜	○ 25m 미만도로변 500% 이하 ○ 25m 이상도로변 800% 이하	
		높 이	○ 25m 미만도로변 7층 이하 ○ 25m 이상도로변 12층 이하	
		형 태	○ 별표3의 상업시설용지	
		배 치	○ 별표2의 상업시설용지	
		색 채	○ 별표6의 색채계획	
		건 축 선	○ 별표2의 상업시설용지	

10) 학교용지 (D-1용도)(변경없음)

도면번호	위 치 (가구번호)	구 분	계 획 내 용	
D-1 (학교용지)	1,25(1,2)	용도	허용용도	○ 교육연구시설 중 학교와 그 부속용도
			불허용도	○ 별표1 D-1의 불허용도
		건 폐 율	○ 40% 이하	
		용 적 륜	○ 150% 이하	
		높 이	○ 5층 이하	
		형 태	-	
		배 치	-	
		색 채	-	
		건 축 선	-	

11) 종교시설용지 (D-2용도)(변경없음)

도면번호	위 치 (가구번호)	구 분	계 획 내 용	
D-2 (종교용지)	16(1,3),23(9) 종교집회장 (D-2 용도)	용도	허용용도	○ 별표1 D-2의 허용용도
			불허용도	○ 별표1 D-2의 불허용도
		건 폐 율	○ 60% 이하	
		용 적 륜	○ 120% 이하	
		높 이	○ 2층 이하	
		형 태	-	
		배 치	-	
		색 채	-	
		건 축 선	-	

12) 아동관련시설용지 (D-3용도)(변경)

■ 기 정

도면번호	위 치 (가구번호)	구 분	계 획 내 용	
D-3 (아동관련시설 용지)	20(5), 36(5~6) 아동관련시설 (D-3용도)	용도	허용용도	○ 별표1 D-3의 허용용도
			불허용도	○ 별표1 D-3의 불허용도
		건 폐 율	○ 60% 이하	
		용 적 륜	○ 150% 이하	
		높 이	○ 3층 이하	
		형 태	○ 별표3의 단독주택용지	
		배 치	○ 별표2의 단독주택용지	
		색 채	○ 별표6의 색채계획	
		건 축 선	○ 별표2의 단독주택용지	

■ 변경

도면번호	위 치 (가구번호)	구 분	계 획 내 용	
D-3 (아동관련시설 용지)	20(5), 36(5~6), 12(2) 아동관련시설 (D-3용도)	용도	허용용도	○ 별표1 D-3의 허용용도
			불허용도	○ 별표1 D-3의 불허용도
		건 폐 율	○ 60% 이하	
		용 적 률	○ 150% 이하	
		높 이	○ 3층 이하	
		형 태	○ 별표3의 단독주택용지	
		배 치	○ 별표2의 단독주택용지	
		색 채	○ 별표6의 색채계획	
		건 축 선	○ 별표2의 단독주택용지	

■ 변경 사유서

변경내용	변경사유
○ 위치(가구번호) 변경 - 12번 가구 2번 획지에 어린이집 신설	○ 기존 단독주택용지(12-2)내 어린이집 신설에 따른 아동관련시 설용지(D-3용도) 위치(가구번호) 변경

13) 공공청사용지 (D-4, D-5용도)(변경없음)

도면번호	위 치 (가구번호)	구 분	계 획 내 용	
D-4 (공공청사)	43(4) 공공청사 (D-4용도)	용도	허용용도	○ 별표1의 D-4의 허용용도
			불허용도	○ 별표1의 D-4의 불허용도
		건 폐 율	○ 60%이하	
		용 적 률	○ 150%이하	
		높 이	○ 4층 이하	
		형 태	-	
		배 치	-	
		색 채	-	
		건 축 선	○ 25m이상도로: 3m (환경영향평가협의사항) ○ 15m미만도로: 1m	

도면번호	위 치 (가구번호)	구 분	계 획 내 용	
D-5 (공공청사)	8(30) 공공청사 (D-5용도)	용도	허용용도	○ 별표1의 D-5의 허용용도
			불허용도	○ 별표1의 D-5의 불허용도
		건 폐 율	○ 60%이하	
		용 적 륜	○ 200%이하	
		높 이	○ 4층 이하	
		형 태	-	
		배 치	-	
		색 채	-	
		건 축 선	○ 25m이상 도로: 3m (환경영향평가협의사항) ○ 15m미만 도로: 1m	

14) 주차장시설용지 (E-1용도)(변경없음)

도면번호	위 치 (가구번호)	구 분	계 획 내 용	
E-1 (주차장)	25(3), 44(48) 주차장 (E-1 용도)	용도	허용용도	○ 별표1 E-1의 허용용도
			불허용도	○ 별표1 E-1의 불허용도
		건 폐 율	○ 60% 이하	
		용 적 륜	○ 300% 이하	
		높 이	○ 5층(20m) 이하	
		형 태	○ 별표3의 주차장	
		배 치	○ 별표2의 주차장	
		색 채	○ 별표6의 색채계획	
		건 축 선	○ 별표2의 주차장	
		기 타	○ 담장 - 도로 등 건축이 금지된 공지에 면한 대지경계부와 공지의 담장설치는 원칙적으로 불허하며 필요시 녹지공간을 두어 담장의 역할을 대신하도록 함 ○ 차량 및 주차에 관한 계획 - 차량출입은 각각으로부터 10m이상 이격하여 설치하여야 함 - 주차장의 용도를 설치할 경우 주차장의 용도 이용을 위한 주차공간을 구분되게 설치하여야 함	

주) ()는 획지번호

15) 체육시설용지(D-6용도)(변경없음)

도면번호	위 치 (가구번호)	구 분		계 획 내 용	
D-6 (체육시설 용지)	12(6)	용도	허용용도	○ 별표1 D-6의 허용용도	
			불허용도	○ 별표1 D-6의 불허용도	
		건 폐 율			○ 60% 이하
		용 적 륜			○ 150% 이하
		높 이			○ 3층 이하 (단, 1층 전부를 피로티 구조로 하여 주차장으로 사용하는 경우 피로티 부분을 층수에서 제외)
		형 태			-
		배 치			-
		색 채			-
		건 축 선			○ 별표2의 체육시설용지

바. 기타 사항에 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 조서(변경없음)

[별표 1] : 건축물 용도 분류표

구분			허용용도	불허용도		건폐율 (%)이하	용적률 (%)이하	높이
				전층 불허용도	1층불허용도			
제1종 일반 주거		A-1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층허용용도 : 단독주택 ○ 1층허용용도 1종근린생활시설, 일반음식점 	○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60	150	○ 3층 이하 (단, 1층 전부를 피로티구조로 하여 주차장으로 사용하는 경우 피로티부분을 층수에서 제외)
		단독 주택 용지	A-2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불허용도 이외의 용도 (건축법 및 인천시건축조례 적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 및 인천광역시도시계획 조례상 불허용도 ○ 1·2종근린생활시설 중 안마사술소, 단란주점, 옥외골프연습장 등 주거환경 침해용도 불허 ○ 교육환경보호구역내 제한용도(보호구역에 한함) ○ 주택(주상복합제외), 기숙사 ○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60	250	5층 이하
제2종 일반 주거	공동 주택 용지	B-1	○ 다세대주택, 연립주택	○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60	다세대 (240), 연립 (150)	○ 다세대 및 연립 - 4층 이하 (단, 1층 전부를 피로티구조로하여 주차장으로 사용하는 경우 피로티부분을 층수에서 제외)
		B-2	○ 저층 APT 및 부대복리시설	○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30	150	5층 이하
		B-3	○ 중층 APT 및 부대복리시설	○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30	200	10층 이하
		B-5	○ 고층 APT 및 부대복리시설	○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23	200	15층 이하
제3종 일반 주거	ㄷ	B-4	○ 고층 APT 및 부대복리시설	○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30	230	15층 이하
준 주 거	근린 생활 시설	C-1	○ 불허용도 이외의 용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택(주상복합제외) ○ 운수시설 중 여객자동차터미널, 공항시설, 항만시설 ○ 의료시설 중 격리병원 ○ 장례식장(종합병원에 설치하는 장례식장은 제외) ○ 공장(인천시 건축조례 허용용도 제외) ○ 창고시설 ○ 자동차 관련시설(주차장, 세차장 제외) ○ 동·식물 관련시설(식물관련시설 제외) ○ 교정 및 군사시설 ○ 발전시설 ○ 묘지 관련 시설 ○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단 주유소, 액화석유가스 충전소 제외) ○ 교육환경보호구역내 제한용도(보호구역에 한함) 		60	150 (15m 미만 도로)	5층 이하 (15m미만 도로)
				350 (15m 이상 도로)	7층 이하 (15m이상 도로)			

구 분			허 용 용 도	불 허 용 도		건폐율 (%)이하	용적률 (%)이하	높이						
				전층 불허용도	1층불허용도									
일반 상업	상업 용지	C-2	○ 불허용도 이외의 용도	○ 주택 (단, 주거용이 9/10이하로 용도복합시 가능)	철물점, 난방, 배관, 페인트 연탄배급소, 장의사, 목공소, 간판업, 염색, 고물상, 건축자재, 알미늄샷 시업 등	70	500 (25m미만도로)	7층 이하 (20m미만도로)						
				○ 운수시설 중 여객자동차 터미널, 공항시설, 항만시설			○ 공장	○ 창고시설	○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단, 주유소, 액화석유 가스충전소 제외)	○ 자동차 관련시설	○ 동·식물 관련시설, 분뇨 및 쓰레기처리시설	○ 교정 및 군사시설	○ 발전시설	○ 묘지시설
제2종 일반 주거	학교	D-1	○ 교육연구시설 중 학교와 그 부속용도	○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40	150	5층 이하						
	종교 시설	D-2	○ 종교시설	○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60	120	2층 이하						
제1종 일반 주거	아동 관련 시설	D-3	○ 노유자시설 중 아동관련시설	○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60	150	3층 이하						
제2종 일반 주거	공공 청사	D-4	○ 업무시설 중 공공업무시설	○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60	150	4층 이하						
	공공 청사	D-5	○ 제1종 근린생활시설 중 보건소 등 공공업무시설	○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60	200	4층 이하						
	주차장	E-1	○ 주차장법 제2조에의 규정에 의한 노외주차장(주차 전용건축물 및 부속용도)	○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내 제한용도 (정화구역에 한함)	○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60	300	5층(20m) 이하						
			○ 지평식 설치시 허용용도 -관리사무소, 주차장의 관리·운영상 필요한 편의시설											
			○ 주차전용건축물 건축시 허용용도 -주차장으로 사용하는 비율이 건축연면적의 70%이상 이어야 함											
			-단독·공동주택(기숙사 제외)											
			-제1종·제2종근린생활 시설(안마시술소, 단란 주점, 장의사, 총포사, 종교시설, 옥외골프연습장제외)											
			-문화 및 집회시설, 판매 시설, 운동시설, 업무시설 또는 자동차관련시설 중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및 인천광역시 도시계획 조례상 허용 용도											

구 분			허 용 용 도	불 허 용 도		건폐율 (%)이하	용적률 (%)이하	높이
				전층 불허용도	1층불허용도			
제1종 일반 주거	체 육 시 설	D-6	○ 체육시설 중 운동시설	○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60	150	○ 3층 이하 (단, 1층 전부를 피로티구조로하여 주차장으로 사용하는 경우 피로티부분을 층수에서제외)

[별표 2] 건축물 배치 분류표

구분	도면 표시	건축물의 배치
단독주택용지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건물배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건축물의 주방향은 남향 또는 남동향을 주로 하되, 동향배치가 불가피한 동서간 구획도로에 접한 획지는 진입구변으로 옥외주차 및 마당을 설치하여 가능한 한 도로와의 이격 유도 ○ 건축한계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도로위계에 따라 차등적용: 주요 간선도로변 3m, 이면도로 1m - 인도부속형 및 차도부속형 - 건축한계선 적용은 규제사항으로 하여 일괄적으로 적용하여 지정효과 극대화 유도
공동주택용지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남향위주로 배치하되 가로망에 평행하거나 직교 하계하여 전체배치에 질서감 부여 ○ 주로 블록내부에 배치하여 판상형 아파트로 이루어지는 단조로운 공간에 변화유도 ○ 남/동향을 전면으로 하여 배치하되 여건에 따라 다양한 주동현식을 도입하여 변화부여 ○ 중층판상형 아파트의 배치를 통하여 경관변화의 요소로서 활용 ○ 아파트의 전면길이는 일조 및 조망을 고려하여 조정배치하고, 변화 있는 층고 배치로 경관 및 식별성이 제고되도록 함 ○ 주민의 프라이버시 침해나 밀폐감을 주지 않는 범위내에서 주된 건물의 향과 직각 또는 변화 있는 방향이 되도록 유도 ○ 건축한계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간선가로변에 접한 부분은 소음방지를 위해 건물을 10m이상 이격하며, 이격부분에 대해서는 소음방지를 위해 식재를 조성함 - 도로위계에 따라 차등적용: 주요 간선도로변 3m, 주요간선도로 연결도로 2m, 이면도로 1m
상업시설용지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건축한계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도로위계에 따라 차등적용: 주요 간선도로변 3m, 주요간선도로 연결도로 2m, 이면도로 1m - 인도부속형 및 차도부속형 - 건축한계선 적용은 규제사항으로 하여 일괄적으로 적용하여 지정효과 극대화 유도
주차장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건축물의 주된 벽면의 방향은 접한 전면가로의 방향과 일치 ○ 건축한계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5m이상 도로변: 3m, 15m미만 도로변: 1m
체육시설	D-6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건축한계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도로변: 1m

[별표 3] 건축물 형태 분류표

구분	도면표시	건축물의 형태
단독주택용지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단독주택지의 모든 건축물은 경사지붕을 유도하여 조화로운 주거지 경관 창출 - 지붕색은 원색사용을 금지함으로써 돌출색채에 의한 주거지경관의 악화 방지 - 옥상물탱크를 FRP조로 설치할 경우 조적등으로 구획하여 보이지 않게 한다. ○ 담장 및 대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담장과 대문은 가로공간의 개방성을 확보하고 단독주택의 과도한 폐쇄감을 방지하기 위하여 높이를 1.5m 이하로 규제 - 담장과 대문 형태는 투시형을 하되, 가급적 생울타리 등 자연요소를 활용하도록 권장 ○ 외벽: 건물의 외벽은 건축물별로 동일한 재료를 사용토록 권장
공동주택용지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아파트 1동의 전면길이는 건축물의 높이에 반비례되도록 유도하며, 개별 구릉지 등의 시각적 개방감부여 및 심리적 중압감배제 등을 위해 주동의 최대길이는 80m 이내로 제한 ○ 아파트의 지붕형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군부대 앞 신규 공동주택지의 지붕형태는 기와잇기형으로 시공하여 민간인의 옥상 진출입을 금지시키도록 함 - 경사지붕(박공지붕)설치를 원칙으로 하되 지붕면적의 70%이상 경사지붕으로 설치 - 경사지붕 설치시 옥상의 설비기기 등 경관불량 요소는 건축물 전면에서 보이지 않도록 설치 - 옥상물탱크를 FRP조로 설치할 경우 조적 등으로 구획하여 보이지 않게 한다.
상업용지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건축물 형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검단사거리에 위치하는 건축물의 경우 주변지역의 랜드마크가 될 수 있도록 형태 유도 - 간선도로에 접하는 필지내의 건축물은 입면형태가 주변건축물들과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유도 ○ 건축물 입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간선도로에 면한 대지의 신축시 가로변의 기존건물과 형태, 재료, 색채조화 권장하여 간선도로의 경관향상 및 연속성 강조 - 간선도로에 위치하는 건축물의 1층 전면의 경우 벽면의 50%이상을 투시형을 조성하여 보행자 공간과의 교류 유도 ○ 옥외광고물 및 조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옥외 광고물의 난립에 의한 가로경관의 질적 수준저하를 방지하고 광고물을 Design 요소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 강구 - 공공부문이 민간부문의 적극적인 조명시설 설치를 선도하고 민간부문도 일정규모이상의 건물은 건물외벽 및 주변환경(조형물·수목·보도)에 조명을 투사하여 야간경관 제고
주차장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건축물의 외벽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건축물의 외벽의 재료 및 색상은 건물전면과 측·후면이 동일하거나 최소한 서로 조화를 이룰 수 있어야 함 - 동일건축물에서 서로 다른 외벽재료를 사용할 경우에는 재료들 간의 조화를 고려하여야 함 - 주차용도층의 외벽은 차량이 노출되지 않도록 하고, 자동차 배기가스 등이 자연적으로 배출되도록 밀폐시키지 않도록 하여야 함 - 주변 가로망과 일관된 통경축이 형성되도록 하여 건축물 입지로 인한 폐쇄감이 들지 않도록 하여야 함 ○ 가로변 및 공지 등 조립식 경량철골조(샌드위치판넬), 무피복철골조, 컨테이너 등의 구조인 건축물과 가설건축물 설치불가

[별표 4] 대지내 공지 및 보행동선에 관한 계획

구 분	대지내 공지
전 면 공 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지경계선과 건축선 후퇴(건축한계선, 벽면지정선)사이의 공지를 전면공지로 조성하되 인도부속형과 차도부속형을 나누어서 적용 ○ 인도부속형 전면공지의 경우 전면인도와 동일한 포장재료 및 패턴사용을 유도하고 보행에 장애가 되는 시설물(화단, 담장, 노상주차장 등) 설치 금지 ○ 차도부속형 전면공지의 경우 전면차도와 단차를 없애고 동일한 포장재료 사용 등으로 차량통행의 장애요소 제거 ○ 전면공지 지정시 지상에 대한 공공의 이용권을 확보하고 지하는 민간개발이 가능하도록 허용
공 개 공 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건축법 제67조에 의한 공개공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용도별 일정규모이상의 경우 지구단위계획에 관계없이 대지면적 일정비율이상을 확보하여야 함 (건축법상의 최소규모, 조성방식 등이 결정되어 있음) ○ 주요간선가로변, 주요결절부 및 대형필지에 공개공지를 확보하여 결절부의 보행 활성화 유도 ○ 공개공지는 위치 및 최소면적 지정에 의하여 확보하도록 유도 ○ 공개공지의 설치형태는 일반적 형태(선형), 피로티 구조, 쌈지공원구조 등 다양한 형태로 조성 가능 ○ 공개공지의 조성은 전면의 인도 및 전면공지와 조성형태를 통일시켜서 조성하게 하며, 인접대지의 공개공지나 쌈지공원이 있는 경우에는 연계 조성을 권장 ○ 공개공지 조성에 대한 세부적인 평가는 개별건축물에 대한 심의시 심의위원회의 결정을 따르도록 유도하여 확보에 따른 융통성을 부여
쌈 지 공 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간선가로변 대지에서 건축법 제32조, 시행령 27조에 의해 설치되는 조경부분과 건축법 67조에 의한 공개공지를 공공이 24시간 이용가능 한 가로변 소공원 일명 ‘쌈지공원’ 으로 조성할 것을 대지면적에 따라 규제 또는 권장 ○ 인접대지와 연계조성 권장(연접한 공지로 조성) ○ 조성방식을 공개공지 조성방식과 동일하게 적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쌈지공원은 공개공지로 조성할 경우에는 45㎡이상, 대지내 조경으로 조성할 때에는 25㎡이상 설치하여야 함 ○ 대지면적 500㎡이상의 대지는 대지면적의 5%이상 쌈지공원으로 조성토록 유도 ○ 공동주택부지는 간선변, 간선가각부 및 버스베이부근에 45㎡이하의 쌈지공원 조성토록 유도
공 공 보 행 통 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상지내 보행환경의 개선을 위하여 주요접근로 및 주요시설 주변 및 세장비가 긴 가구내에 원거리 이동으로 보행자에게 불편을 초래할 경우 공공보행통로를 설치(최소 4m이상) ○ 벽면한계선에 의한 설치로 건축법상의 대지안의 조경면적을 활용하여 영세필지의 부담저감 ○ 필지간의 단차 및 경계선의 상황을 고려하여 현실적으로 적용가능한 통로개설 유도 ○ 공공보행통로에는 건축물 부설주차장, 담장, 계단, 화단, 환기구 등 보행의 통행에 장애를 주는 일체의 구조물은 설치금지 ○ 공공보행통로의 경우 제공되는 면적에 대해 조경면적으로 인정
보행자 전 용 도 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차량의 통행이 전혀 허용되지 않는 도로로서 독특한 장식, 포장패턴이나 상징적인 환경장치물 설치유도 하여 장소성과 활동성을 제고 ○ 녹지조성보다는 포장 및 시설물 위주로 설치하고 인접대지내 공지 및 전면공지와 연계조성 ○ 기존 차도의 폐쇄 및 건축한계선 지정을 통해 확보 (최소 4m이상)

[별표 5] 차량동선, 주차시설, 단지내시설물에 관한 계획

구 분	차량 동선 및 주차에 관한 계획
단 독 주 택 용 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차량의 진출입으로 인한 혼잡이 예상되는 가구의 장·단변 교차로 부근에 차량출입불허구간 지정 ○ 옥내주차장 보다는 옥외주차장의 설치를 권장함으로써 주차장의 타용도로의 전용을 방지, 이때 옥외주차장은 담장밖에 설치하도록 유도 ○ 인접대지와의 공동주차장 설치 유도 ○ 복합주택의 경우 주차장 설치기준을 강화하여 법정주차면수에 1면을 추가적으로 확보 유도
공 동 주 택 용 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간선도로변, 주요 교차점 부근 등 차량교통량이 많은 지역에 차량진출입 불허구간 지정 ○ 차량출입구는 단지별로 1~2개씩만 허용함으로 차량혼잡을 방지하고 보행자의 안전성을 확보 ○ 단지내 통과교통을 배제하고 차량동선과 보행동선과의 상충을 최소화 ○ 단지내 진입도로와 외곽도로는 T자형 교차를 원칙으로 하되, 단지내 교차점간 거리가 35m미만일 경우 +자형 교차가 되도록 함 ○ 공동주택 부설주차장은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제시한 설치기준을 적용
상 업 용 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차량동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m폭 이상의 도로에서 주차출입은 원칙적으로 금지하되 부득이하게 주차출입구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공동주차통로설치(통로의 폭은 대지경계선에서 각각 3m 이상 확보) - 20m폭 이상의 도로가 교차하는 교차각각부는 각 15m 구간에서의 주차출입을 금지 - 통로주차램프 및 카엘리베이터의 시작부분은 도로와 접하는 건축선에서 최소 3m이상 이격시켜서 대기주차에 의한 보행장애 방지 ○ 주차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300㎡이하의 대지가 옥외주차장을 설치할 경우 2개 대지별로 공동으로 주차장 설치를 유도하여 주차장의 효율을 높이고 주차출입구의 개소 축소 ○ 기존 차도의 폐쇄 및 건축한계선 지정을 통해 확보 (최소 4m이상)
식 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도로폭 15m이상, 보도폭 3m이상인 도로에 가로수 식재를 원칙으로 하되 도로의 여건에 따라 융통성 있게 조정한다. ○ 가로조명과 교통안내표시판, 가로장치물 등이 차폐되지 않도록 유의하여 식재하여야 한다. ○ 간선도로의 교차부분에서는 운전자와 보행인이 도로 변화를 쉽게 인지할 수 있도록 수목식재를 배제하여 시야를 개방한다. ○ 2열식재(건물앞 식재포함)를 원칙으로 하고 일반가로변 식재는 간격 6~8m를 유지하되 버스정차장 주위에는 이용객 및 운전자의 시야확보를 위해 일정거리(20m)를 후퇴하여 식재한다. ○ 가로변 독자성과 식별성 구현을 위해 일정구간을 기본단위로 수종선택 및 배식기법의 다양화를 기하여야 한다. ○ 보행밀도가 높은 곳의 가로수는 생육환경을 유지하기 위해 수목보호대를 폭 1~2m이하로 설치하고 수목보호대를 이용한 다용도 휴게·벤치공간(쌈지공원)을 조성한다. ○ 지하 공동구와 같은 구조물이 있는 인공지반위에 식재할 경우 1.2m의 토심과 주당 최소 9㎡의 면적을 확보하여야 한다. ○ 건물과 건물 사이에 가려져 있는 녹지 및 조형물의 전방배치를 유도하여 승/하차장 주변 위주로 POCKET-PARK 형식의 정적 휴게공간 설치를 유도한다.

구 분	차량 동선 및 주차에 관한 계획
가 로 장 치 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가로상에 배치되는 각종 가로장치물간의 형태적 부조화를 방지하고, 가로변 이미지의 제고를 위해 가로장치물의 형태, 자료, 색상을 통합, 조절하는 가로장치물 개발 기본전략프로그램을 구축하고 이를 가로장치물 설계에 반영토록 하여야 한다. ○ 가로별 특화를 위해 가로의 성격에 따라 특정 가로단위로 작성하여 가로별 재료, 형태의 동질화가 이루어져야 한다. ○ 상화보완적 가로장치물은 가급적 통합설치하여 보도 구간내 각종 시설물의 난립을 방지 한다. ○ 주요시설 입구, 대중교통수단 승하차지점, 횡단보도 등 주요 집분산 지점에 가로 장치물을 집중 설치하여 집약적 효과를 도모하여야 한다.
조 명 시 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도로의 성격, 기능, 폭원에 따라 적합한 광원, 조도, 배치방식, 간격, 높이 등을 결정하여 설치한다. ○ 가로변에는 일정간격으로 설치하며 교차로, 곡선부 로타리, 횡단보도 등 도로구조가 변화하는 곳과 교통안전시설이 집중 설치 되는 지점 및 사고다발 예상지점에는 밝은 조명을 설치하여야 한다. ○ 보도의 보행자용 가로등은 상호 교호형식으로 배치하고 조명이 발산하는 색감은 가로특성에 알맞게 유도·조정한다. ○ 가로등주를 현재의 Single-arm Bracket에서 부분적으로 Double-arm Bracket으로 개선하여 보도의 조명을 높이고 현재 수은등으로 되어 있는 광원은 보장한다.
포 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조성방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가로는 일반포장구간과 특별포장구간으로 구분하여 가로의 일정 간단위별로 특화포장하고 휴먼스케일을 고려한 일정 모듈을 개발하여 조성한다. - 가로위계별, 장소별 특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전통문양, 새, 꽃 등의 각종 패턴을 사용하여 밝은 가로분위기를 조성하고 단순한 형태의 기본패턴과 3-4종의 변형패턴을 조합하도록 한다. - 대로변 보도는 가로수 식재간격인 8m를 기본모듈로 한 단순한 형태미를 갖은 패턴의 반복을 기본으로 하되 시각적 흥미유발과 방향성을 제공할 수 있도록 한다. - 보차공존구간은 보행자의 안전이 요구되는 지점에는 거친 재질을 이용하여 서행운전을 유도하고 보행특성에 따라 포장재료의 질감을 다르게 조성한다. - 보도와 차도가 교차되는 보·차혼용통로의 입구 및 공동주차장 출입구 전면의 보도포장은 견고하고 식별성이 용이한 유색 포장재료의 사용을 권장하며, 차도보다는 보도의 연속성이 강조되어야 한다. ○ 패턴 및 질감의 적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포장의 폭과 줄눈의 반복, 재료의 질감을 통해 보행자의 통행속도 및 리듬감을 조절한다. - 격자형 패턴은 중립적이고 방향성이 없는 곳에 사용을 유도하고 공간의 확산을 표현하기 위해서는 원형의 패턴을 사용한다. - 포장패턴은 건축물 및 부지내 요소들과 조화되어야 하며, 요철포장은 완화와 정체를 표현할 수 있으며, 차량속도를 제어할 수 있어 보행의 안전 유도에 적절하게 사용한다. - 공간을 상호간 대비시키고자 할 때에는 직선과 곡선의 반복이용 및 이중질감을 이용하여 표현한다. - 단위 줄눈이 작고 방향성이 없는 포장패턴은 안정감이 있으므로 휴식/기다림 공간으로의 사용을 유도한다. - 이동성이 강한 지역의 포장패턴은 울동적이고 운동감이 강조되는 포장패턴을 사용한다.

구 분	차량 동선 및 주차에 관한 계획
도시 안 내 표 지 시 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조성방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일괄설계 및 통합배치를 통한 형태적 통일성을 기하여 효과적으로 정보전달을 할 수 있어야 한다. - 안내표지판의 높이, 크기, 형태, 색채, 재질 등 식별성을 최대한 확보하고 주행 및 보행속도를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설계 배치하여야 한다. - 안내표지판은 지역의 특성을 살리고 유사형태의 안내표지판을 통일하여 일관성을 유지하고 안내판의 크기는 단계를 두어 신축성있게 규격화하여야 한다. - 식별성과 지역이미지를 높이기 위해 심볼, 로고등 그래픽요소를 개발 활용하여야 한다. ○ 설치위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보행 결절점이나 교통 결절점에 종합안내시설을 배치하여 지구전체에 대한 정보와 안내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종합안내판으로 계획하여 중랑구 전체의 주요 도로 및 시설, 대중교통수단 이용 등에 관한 정보를 수록한다. - 보행자도로와 대로가 교차하는 지점에 지구안내판을 설치하여 도보권내에 안내가 이루어지도록 한다. - 연속적인 안내체계가 이루어지도록 주요시설물 주변의 결절점 및 교차점에 방향안내판을 설치한다. - 버스정류장에 설치되는 안내판은 전체 버스노선과 인접주요시설의 안내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한다.
경 관 계 획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중심가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중심가로서 상징성과 흡인성을 고려하여 규모있는 건축물 입지 유도 - 도로변으로 공개공지 확보 및 건축한계선 지정으로 개방감 및 정연한 가로분위기 연출 - 노변을 통한 건물의 조망을 유도하여 자연스러운 시각 및 운행 유도 - 대로 전면의 공개공지는 주변의 건축물과 조화된 중심 녹지축을 형성하여 지구 중심으로서의 상징과 시각축 형성 - 건축물 전면의 색채, 형태, 재료를 가능한 동일계통 권장 ○ 보행자 도로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건축물의 이격 및 주변과 어울리는 재질과 색채로 조성하여 개방감과 심미적 경관 조성 - 공개공지 및 오픈스페이스와 연계하여 자연경관 요소를 도입하여 시각적 쾌적함 도모 ○ 시가지 경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구내 동남APT에 의한 경관훼손 완화를 위하여 주변 공동주택용지를 고층으로 계획하되 15층이하로 규제하여 원만한 스카이라인 유도 - 지구내 중심인 검단사거리 주변의 건축물에 대하여 랜드마크적인 형태유도로 인지성 및 상징성 유도 - 건축물의 형태, 재료, 색채 등 획일화 방지를 위하여 블록별로 특성화된 외관형성 유도 ○ 자연녹지 경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고층 건물군(대부분 APT)의 경우 건축물 주변으로 조경공간을 설치하여 위압감을 완화하고 건물사이 개방공간은 낮은 관목의 식재와 낮은 단지시설물(가로등, 담장, 표지판 등) 설치 유도

[별표 6] 경관계획

구 분	경관 계획
경관계획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저층 주거단지 - 1종주거단지의 경우 층수를 2층 이하로 계획하고 경사지붕을 권장하여 시각적인 다채로움 조성 - 수목의 식재 및 보존으로 수립에 쌓인 전원적인 경관 형성 - 지형을 감안한 건축물 배치로 자연스러운 경관 유도
건축물 경관계획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건축물의 외벽면 처리 • 외벽면의 통일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구단위계획구역내 건축물은 모든 외벽면의 의장, 재료, 색채에 있어 통일성을 유지하여야 하며, 동일 건축물에서 서로 다른 외벽재료를 사용할 경우에는 재료들 간의 조화를 고려하여야 한다. • 개구부 없는 외벽면의 처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도로의 교차로에 면한 건축물은 개구부가 없는 벽면을 도로에 노출하여서는 아니 된다. 단, 벽면에 조경, 벽화등 장식적 처리를 하여 당해 관련심의위원회의 인정을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투시벽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간선변에 면한 건축물은 1층 전면 벽면면적의 50%이상 투시벽 처리를 하여야 한다. • 투시형 셔터의 사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도로에 면한 건축물의 1층셔터는 투시형 셔터를 사용하여야 한다. 측면 이격공지의 차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간선도로변 대지의 건물과 건물사이의 이격부분이 통로로 사용되지 않을 경우 이격공지는 차폐조경, 담, 문 등으로 차폐하여야 한다. - 이때 담, 문, 지하층출입구 등은 건물의 벽면과 조화되는 재료를 사용하여야 한다. ○ 전면부 입면처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구단위계획에 의하여 입면에 대한 규제가 적용되는 대지의 경우에는 상기의 건축물 외관에 대한 규제사항과 함께 아래와 같은 사항들을 추가로 준수하여야 한다. ○ 외벽면 재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면 외벽면의 재료는 인접건물과 조화를 이루어야 한다. ○ 개구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간선도로변에 면한 필지의 건축물의 경우 개구부의 모양, 크기, 비례에 대하여 인접 주변 건축물과 조화를 이루어야 한다. - 개구부의 형태는 인접건축물과 조화를 이룰 수 있는 수평띠형, 격자형을 사용 한다. ○ 조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면에 투시형 벽면을 설치할 경우에는 내부에 조명을 설치하여야 하며, 건축물 외부에도 건축물 전면을 투사하는 조명을 설치하여야 한다. ○ 간판, 옥상 및 기타구조물의 처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구단위계획으로서 따로 규정된 측면 이격공지 차폐목적 이외의 지하층 출입구를 설치할 경우 출입구에는 지붕구조물을 설치할 수 없다. - 지구단위계획구역내 옥외 광고물의 설치는 인천광역시 옥외광고물등 관리조례에 따른다.

구 분	경관 계획
건축물 경관계획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건축물의 외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건축물 외벽의 재료는 주변경관과 조화된 질이 높은 것의 사용을 권장한다. - 건축물외벽 색채기조는 인접건축물과 조화를 이루는 중후한 색조의 사용을 권장한다. ○ 건축물의 1층 외부형태와 야간조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간선도로변에 면한 대지에 신축되는 건물은 쇼윈도를 설치하는 등 가로외부의 분위기를 배려할 수 있는 건축물의 형태 및 조명시설의 설치를 권장한다. - 간선도로변에 면하는 대지에 5층 이상 신축 또는 재건축될 건물은 가로외부 벽을 밝힐 수 있는 야간조명등 설치를 권장한다. 조명의 방향은 상향이 될 수 있도록 한다.
공원·녹지 경관계획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본방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원은 수목분포도, 지형여건을 고려하여 계획 - 어린이공원은 단독주택용지를 대상으로 이용권 및 유치거리 등을 고려하여 4개소를 분산배치 - 공원은 이용자의 일상적인 이용, 높이, 운동, 휴식공간 등을 고려하여 조성 - 쾌적한 주거환경 창출에 기여하여, 주민의 다양한 정서수용을 위한 경관조성 - 대상지내 각 공원과의 연계를 고려한 동선계획을 수립하여 이용의 연속성을 부여 ○ 식재계획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도입수종은 풍토에 적합한 수종 - 수형이 아름답고 향토적 분위기를 느낄 수 있는 수종 - 수종의 수급이 편리하고 유지관리가 용이한 수종
색채계획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동주택단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건물옥상부에 녹지공간 활용 및 가구수 20호 이상의 공동주택지에 30%이상의 녹지공간 조성 (다세대주택은 제외) ○ 공동주택용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간선변 고층아파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간선도로변과 사업지구 진입부를 강조할 수 있는 Landmark기능 및 단지내 쾌적한 분위기 조성을 위하여 밝고 명랑한 색조계열 사용 - 활동적이고 따뜻하고 산뜻하며 주의도가 높은 배색 - 사업지구의 상징적인 부분으로 진입부의 이미지와 친근감이 있도록 계획 • 내부 저층·중층아파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변의 안정된 주거환경 분위기 조성을 위하여 침착한 색조계열 사용 - 자연경관과의 조화를 고려하여 채도 및 명도를 낮추어 주조색으로 사용토록 권장 ○ 단독주택용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원색사용을 금하며(강조색은 가능) 저채도 색채를 사용 - 건축물의 좌우배면은 전면색채와 동일계통의 색채를 사용 - 검정색 계통의 벽돌사용을 지양하며 밝고 명랑한 분위기의 도시경관 형성 ○ 상업용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간선도로변과 사업지구 진입부를 강조할 수 있는 Landmark기능이 가능하도록 색채계획 - 활동적이고 따뜻하고 산뜻하며 주의도가 높은 배색

[별표 7] 기타사항

- 본 계획에 별도로 언급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는 기존의 법규나 인천광역시 조례 및 교통영향평가·환경영향평가·군부대 협의 등의 협의사항을 준용함
- 본 지구단위계획의 일부 규제내용이 기존의 법, 시행령, 시행규칙 등 관련법령의 내용과 서로 다를 경우에는 이들 중 그 규제내용이 강화된 것을 준용함
- 건축법령과 인천시 건축조례, 서구 관련조례에 따른다(관련법 개정 및 변경시 이를 따른다)

(1) 기존 건축물 및 획지분할에 따른 특례

- 환지계획에 의해 발생한 최소규모 미달필지에 대해서는 지구단위 계획에서 제시한 최소규모 미달필지의 적용을 예외로 한다.
- 기존 건축물에 대해서는 건축법 제5조의2 규정에 의거 건축할 수 있다.
- 단독주택용지 및 근린생활시설용지의 획지에 한하여 대지분할을 할 경우 1개의 필지가 획지계획에 의한 최소 면적에 만족하고 잔여 획지가 최소면적의 80%이상일 경우 대지분할을 할 수 있다.
- 기존건축물의 용도변경은 인천광역시건축조례의 규정에서 허용한 건축물 용도범위내에서 변경할 수 있다.(단, 1종일반지역은 제외한다)

(2) 관련기관 협의사항 반영

- 교통영향평가, 환경영향평가 및 에너지사용계획서 등을 참고하여 지구단위계획에서 미반영된 사항을 반영하여야 한다.

◦ 군부대 협의사항

- 적용지역 : 7 Block
- 건물방향 : 건축물 측면이 군부대방향으로 향하도록 조치
- 건물높이 : 현 검단군인APT높이(5층) 이내로 제한
- 건물지붕형태 : 기와잇기형으로 시공
- 건물옥상출입 불가
- 적용지역 : 8·9 Block
- 건물높이 : 기존 검단군인APT(5층)에서 하나APT(15층)까지의 지붕 끝선을 잇는 사선범위내에서 건축허용. 단. 사격구역 범위 내 건축될 건물은 모두 적용 요망

◦ 환경영향평가 협의사항

- 대로변 공동주택의 경우 10m이상의 건축선을 이격하고 이격부지내 높이3m의 방음독을 설치하고 방음독 상단부에 높이 5m의 방음벽을 설치하며 도로변에서 노출된 창문은 이중창으로 설치, 이격되는 지점의 도로변으로는 수목식재를 계획함
- 대로변 연립 및 다세대 주택의 경우 건축선을 3m이격하며, 방음벽 5m 이상 높이로 설치
- 공동주택단지내 도로 및 주차장포장은 수원함양을 위하여 가능한한 투수성재료로 포장하여야 함
- 공동주택단지는 건물옥상부에 녹지공간 활용 및 가구수 20호이상의 공동주택지에 30%이상의 녹지공간 조성

4. 지형도면 : 게재생략(갖추어 둔 장소의 지형도면과 같음)

- 토지이음(<http://www.eum.go.kr>)에서 열람 가능

인천광역시서구고시 제2021-91호

인천광역시 서구 도로명주소 고시

도로명주소법 제18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4조제1항, 제25조제2항에 따라 건물 등에 부여·변경·폐지한 도로명주소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1. 5. 10.

인천광역시 서구청장

○ 부여·변경·폐지 도로명주소 : 인천광역시 서구 중봉대로 262-10 외 10건

종전주소	도로명주소	도로명주소 부여(변경·폐지)사유	도 로 명 고 시 일	도 로 명 부 여 사 유
		별 도 열 략		

※ 고시내용 및 기타 자세한 사항은 인천시 서구청 토지정보과(☎560-4830)에 문의 또는 도로명주소 안내 홈페이지(www.juso.go.kr)에서 열람하시기 바랍니다.

○ 도로명주소 사용 및 공부상 주소전환

- 도로명주소는 2021.5.10일자로 고시된 후 도로명주소법 제19조제1항에 의거 공법관계에 있어서 주소로 사용됩니다.
- 공공기관에서 비치·관리하고 있는 각종 공부상 주소(소재지)는 해당기관에서 도로명주소로 변경합니다.

○ 도로명주소 변경 등

- 도로명 또는 건물번호의 변경은 도로명주소법 시행령 제7조의3 및 제9조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도로명은 도로명주소법 시행령 제7조제7항에 의거 당해 도로명이 고시된 날부터 3년이 지난 후에 변경할 수 있습니다.

○ 참고사항

- 공동주택의 경우 종전주소의 공동주택명, 동·호와 도로명주소의 상세주소는 공법관계의 각종 공부상 기재된 주소로 한다.

인천광역시 서구 도로명주소 부여 고시조서

고시일 : 2021-5-10

연번	지번주소	도로명주소	도로명고시일	도로명 부여사유	비고
1	인천광역시 서구 석남동 650-176	인천광역시 서구 중봉대로 262-10 (석남동)	20090706	임진역단 당시 의방장으로 급선 싸움에서 7백 의방과 함께 진사한 조헌신생의 호를 따서 제명	
2	인천광역시 서구 석남동 650-174	인천광역시 서구 중봉대로 262-16 (석남동)	20090706	임진역단 당시 의방장으로 급선 싸움에서 7백 의방과 함께 진사한 조헌신생의 호를 따서 제명	
3	인천광역시 서구 석남동 650-179	인천광역시 서구 중봉대로 262-11 (석남동)	20090706	임진역단 당시 의방장으로 급선 싸움에서 7백 의방과 함께 진사한 조헌신생의 호를 따서 제명	
4	인천광역시 서구 불로동 61-9	인천광역시 서구 결단로 743-5 (불로동)	20090710	결단이 가 결단으로 변천한 것으로 옛 지명 부여 및 결단신도시 중심을 가로 지르는 도로	
5	인천광역시 서구 가좌동 150-124	인천광역시 서구 가좌로77번길 30 (가좌동)	20090922	가좌로의 시작지점에서부터 약 770m지점에서 왼쪽으로 분기되는 도로	
6	인천광역시 서구 원당동 803-13	인천광역시 서구 고산후로161번안길 19 (원당동)	20081231	고산후로161번길의 안쪽으로 분기된 도로	메트로빌
7	인천광역시 서구 경서동 363-357	인천광역시 서구 사렐로44번길 18 (경서동)	20090922	사렐로의 시작지점에서부터 약 440m지점에서 오른쪽으로 분기되는 도로	
8	인천광역시 서구 청라동 55-11	인천광역시 서구 청라한내로161번길 25-7 (청라동)	20140804	청라국제도시 이미지 부각 및 청라한내로 시작지점에서부터 약 1,610m 지점에서 왼쪽으로 분기되는 도로	
9	인천광역시 서구 청라동 15-1	인천광역시 서구 비즈니스로193번길 8-15 (청라동)	20201012	도로의 기점이 접한 대로, 호의 기초번호로 도로명부여	

인천광역시 서구 도로명주소 변경 고시조서

고시일 : 2021-5-10

연번	도로명주소		도로명주소 변경사유	도로명 고시일	도로명 부여사유	비고
	변경전 도로명주소	변경후 도로명주소				
1	인천광역시 서구 두루물로 16 (오류동)	인천광역시 서구 두루물로 18 (오류동)	건물번호 합병	20090922	두루물로라는 옛 자연마을의 이름 반영	

인천광역시 서구 도로명주소 폐지 고시조서

고시일 : 2021-5-10

연번	도로명주소	폐지사유	도로명고시일	도로명 부여사유	비고
1	인천광역시 서구 백범로 706 (가좌동)	철거	20090710	인천에서 옥고를 치르고 부두에서 노역을 한 바 있었던 임시정부 주석 김구의 호를 따 명명	

인천광역시서구공고 제2021-833호

도로 불법 노상 적치물 등 보관 및 처리 공고

도로법 제61조(도로의 점용 허가) 및 제75조(도로에 관한 금지행위) 등을 위반하여 도로법 제74조(행정대집행의 적용 특례)에 따라 노상 적치물 등을 제거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75조(적치물 등의 보관 및 처리 등), 제76조(적치물 등의 반환과 귀속) 및 시행규칙 제37조(적치물 등의 관리 등)에 따라 적치물 등의 보관 장소 및 내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 5. 10.

인천광역시 서구청장

1. 공고내용 : 도로 불법 노상 적치물 등 보관 및 처리
2. 공고기간 : 2021. 5. 10. ~ 2021. 5. 25.(16일간)
3. 법적근거 : 도로법 제61조 및 같은 법 제74조, 제75조,
같은 법 시행령 제75조, 제76조 및 시행규칙 제37조
4. 공고방법 : 인천광역시 서구청 홈페이지, 구보 및 전국 시·군·구 게시판
5. 보관목록 : 공고 대상(세부 붙임 참조)

적치물등의 품명·규격·수량	위반 장소	보관일시 및 장소	취급자	비고
발판 10건	길주로 119	2021. 5.10. ~ 6.10.(1개월) 원창동 385 일원	인천광역시 서구청	
라바콘 6건	가좌동 597			
의자 1건				
강통 4건				
통 3건				
돌 2건				
생수병 6건				

6. 적치물처리

가. 공고일로부터 1개월이 지나도 적치물 등을 반환받을 소유자 또는 관리인을 알 수 없거나 반환 요구가 없을 때에는 도로법 시행령 제76조(적치물 등의 반환과 귀속) 규정에 의거 인천광역시 서구청에 귀속 · 폐기처분되며, 반환할 때에는 과태료 부과, 적치물의 제거 · 운반 · 보관에 소요된 비용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7. 기타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인천광역시 서구 도로과(☎ 032-560-4487)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인천광역시서구공고 제2021-852호

등록 및 폐기 공인 공고

「인천광역시 서구 공인 조례」 제6조 및 제10조의 규정에 의거 등록·폐기한 공인을 같은 조례 제9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 5. 10.

인천광역시 서구청장

1. 공인 등록 및 폐기 사유

: 2021.5.3일자 조직개편에 따른 부서 폐지·신설 및 명칭변경,
인증기 노후 및 고장에 따른 폐기

2. 공인 등록·폐기일 : 2021년 5월 10일

3. 등록 및 폐기 공인명 및 인영 : “별첨” 참조

등록 공인 목록

연번	공인명	종류	규격	등록사유	비고
1	인천광역시서구경제정책과분임징수관인	회계관직인	2.0cm x 2.0cm	2021. 5. 3일자 조직개편에 따른 부서명칭변경	
2	인천광역시서구경제정책과분임재무관인	회계관직인	2.0cm x 2.0cm	2021. 5. 3일자 조직개편에 따른 부서명칭변경	
3	인천광역시서구경제정책과물품운용관인	회계관직인	2.0cm x 2.0cm	2021. 5. 3일자 조직개편에 따른 부서명칭변경	
4	인천광역시서구경제정책과분임물품출납원인	회계관직인	1.8cm x 1.8cm	2021. 5. 3일자 조직개편에 따른 부서명칭변경	
5	인천광역시서구경제정책과일상경비출납원인	회계관직인	1.8cm x 1.8cm	2021. 5. 3일자 조직개편에 따른 부서명칭변경	
6	인천광역시서구식품산업위생과분임징수관인	회계관직인	2.0cm x 2.0cm	2021. 5. 3일자 조직개편에 따른 부서명칭변경	
7	인천광역시서구식품산업위생과분임재무관인	회계관직인	2.0cm x 2.0cm	2021. 5. 3일자 조직개편에 따른 부서명칭변경	
8	인천광역시서구식품산업위생과물품운용관인	회계관직인	2.0cm x 2.0cm	2021. 5. 3일자 조직개편에 따른 부서명칭변경	
9	인천광역시서구식품산업위생과분임물품출납원인	회계관직인	1.8cm x 1.8cm	2021. 5. 3일자 조직개편에 따른 부서명칭변경	
10	인천광역시서구식품산업위생과일상경비출납원인	회계관직인	1.8cm x 1.8cm	2021. 5. 3일자 조직개편에 따른 부서명칭변경	
11	인천광역시서구도로과분임징수관인	회계관직인	2.0cm x 2.0cm	2021. 5. 3일자 조직개편에 따른 부서명칭변경	
12	인천광역시서구도로과분임재무관인	회계관직인	2.0cm x 2.0cm	2021. 5. 3일자 조직개편에 따른 부서명칭변경	
13	인천광역시서구도로과물품운용관인	회계관직인	2.0cm x 2.0cm	2021. 5. 3일자 조직개편에 따른 부서명칭변경	
14	인천광역시서구도로과분임물품출납원인	회계관직인	1.8cm x 1.8cm	2021. 5. 3일자 조직개편에 따른 부서명칭변경	
15	인천광역시서구도로과일상경비출납원인	회계관직인	1.8cm x 1.8cm	2021. 5. 3일자 조직개편에 따른 부서명칭변경	
16	인천광역시서구도로과수입금출납원인	회계관직인	1.8cm x 1.8cm	2021. 5. 3일자 조직개편에 따른 부서명칭변경	
17	인천광역시서구보건소치매정신돌봄과분임징수관인	회계관직인	2.0cm x 2.0cm	2021. 5. 3일자 조직개편에 따른 부서명칭변경	
18	인천광역시서구보건소치매정신돌봄과분임재무관인	회계관직인	2.0cm x 2.0cm	2021. 5. 3일자 조직개편에 따른 부서명칭변경	
19	인천광역시서구보건소치매정신돌봄과물품운용관인	회계관직인	2.0cm x 2.0cm	2021. 5. 3일자 조직개편에 따른 부서명칭변경	
20	인천광역시서구보건소치매정신돌봄과분임물품출납원	회계관직인	1.8cm x 1.8cm	2021. 5. 3일자 조직개편에 따른 부서명칭변경	
21	인천광역시서구보건소치매정신돌봄과일상경비출납원	회계관직인	1.8cm x 1.8cm	2021. 5. 3일자 조직개편에 따른 부서명칭변경	
22	인천광역시서구기후에너지정책과분임징수관인	회계관직인	2.0cm x 2.0cm	2021. 5. 3일자 조직개편에 따른 부서 신설	
23	인천광역시서구기후에너지정책과분임재무관인	회계관직인	2.0cm x 2.0cm	2021. 5. 3일자 조직개편에 따른 부서 신설	
24	인천광역시서구기후에너지정책과물품운용관인	회계관직인	2.0cm x 2.0cm	2021. 5. 3일자 조직개편에 따른 부서 신설	
25	인천광역시서구기후에너지정책과분임물품출납원인	회계관직인	1.8cm x 1.8cm	2021. 5. 3일자 조직개편에 따른 부서 신설	
26	인천광역시서구기후에너지정책과일상경비출납원인	회계관직인	1.8cm x 1.8cm	2021. 5. 3일자 조직개편에 따른 부서 신설	





폐기 공인 목록

연번	공인명	종류	규격	폐기사유	비고
1	인천광역시서구경제에너지과분임징수관인	회계관직인	2.0cm x 2.0cm	2021. 5. 3일자 조직개편에 따른 부서명칭변경	
2	인천광역시서구경제에너지과분임재무관인	회계관직인	2.0cm x 2.0cm	2021. 5. 3일자 조직개편에 따른 부서명칭변경	
3	인천광역시서구경제에너지과물품운용관인	회계관직인	2.0cm x 2.0cm	2021. 5. 3일자 조직개편에 따른 부서명칭변경	
4	인천광역시서구경제에너지과분임물품출납원인	회계관직인	1.8cm x 1.8cm	2021. 5. 3일자 조직개편에 따른 부서명칭변경	
5	인천광역시서구경제에너지과일상경비출납원인	회계관직인	1.8cm x 1.8cm	2021. 5. 3일자 조직개편에 따른 부서명칭변경	
6	인천광역시서구청장인/경제에너지과민원전용	기관장인	2.4cm x 2.4cm	인증기 노후 및 고장에 따른 폐기	
7	인천광역시서구위생과분임징수관인	회계관직인	2.0cm x 2.0cm	2021. 5. 3일자 조직개편에 따른 부서명칭변경	
8	인천광역시서구위생과분임재무관인	회계관직인	2.0cm x 2.0cm	2021. 5. 3일자 조직개편에 따른 부서명칭변경	
9	인천광역시서구위생과물품운용관인	회계관직인	2.0cm x 2.0cm	2021. 5. 3일자 조직개편에 따른 부서명칭변경	
10	인천광역시서구위생과분임물품출납원인	회계관직인	1.8cm x 1.8cm	2021. 5. 3일자 조직개편에 따른 부서명칭변경	
11	인천광역시서구위생과일상경비출납원인	회계관직인	1.8cm x 1.8cm	2021. 5. 3일자 조직개편에 따른 부서명칭변경	
12	인천광역시서구도시기반과분임징수관인	회계관직인	2.0cm x 2.0cm	2021. 5. 3일자 조직개편에 따른 부서명칭변경	
13	인천광역시서구도시기반과분임재무관인	회계관직인	2.0cm x 2.0cm	2021. 5. 3일자 조직개편에 따른 부서명칭변경	
14	인천광역시서구도시기반과물품운용관인	회계관직인	2.0cm x 2.0cm	2021. 5. 3일자 조직개편에 따른 부서명칭변경	
15	인천광역시서구도시기반과분임물품출납원인	회계관직인	1.8cm x 1.8cm	2021. 5. 3일자 조직개편에 따른 부서명칭변경	
16	인천광역시서구도시기반과일상경비출납원인	회계관직인	1.8cm x 1.8cm	2021. 5. 3일자 조직개편에 따른 부서명칭변경	
17	인천광역시서구도시기반과수입금출납원인	회계관직인	1.8cm x 1.8cm	2021. 5. 3일자 조직개편에 따른 부서명칭변경	
18	인천광역시서구치매돌봄과분임징수관인	회계관직인	2.0cm x 2.0cm	2021. 5. 3일자 조직개편에 따른 부서명칭변경	
19	인천광역시서구치매돌봄과분임재무관인	회계관직인	2.0cm x 2.0cm	2021. 5. 3일자 조직개편에 따른 부서명칭변경	
20	인천광역시서구치매돌봄과물품운용관인	회계관직인	2.0cm x 2.0cm	2021. 5. 3일자 조직개편에 따른 부서명칭변경	
21	인천광역시서구치매돌봄과분임물품출납원인	회계관직인	1.8cm x 1.8cm	2021. 5. 3일자 조직개편에 따른 부서명칭변경	
22	인천광역시서구치매돌봄과일상경비출납원인	회계관직인	1.8cm x 1.8cm	2021. 5. 3일자 조직개편에 따른 부서명칭변경	
23	인천광역시서구지역보건과분임징수관인	회계관직인	2.0cm x 2.0cm	2021. 5. 3일자 조직개편에 따른 부서 폐지	
24	인천광역시서구지역보건과분임재무관인	회계관직인	2.0cm x 2.0cm	2021. 5. 3일자 조직개편에 따른 부서 폐지	
25	인천광역시서구지역보건과물품운용관인	회계관직인	2.0cm x 2.0cm	2021. 5. 3일자 조직개편에 따른 부서 폐지	
26	인천광역시서구지역보건과분임물품출납원인	회계관직인	1.8cm x 1.8cm	2021. 5. 3일자 조직개편에 따른 부서 폐지	
27	인천광역시서구지역보건과일상경비출납원인	회계관직인	1.8cm x 1.8cm	2021. 5. 3일자 조직개편에 따른 부서 폐지	

□ 등록 공인 내역

등록공인명	등록사유	등록일자	인 영
인천광역시서구 경제정책과 분임징수관인	2021. 5. 3일자 조직개편에 따른 부서 명칭변경	2021년 5월 10일	
인천광역시서구 경제정책과 분임재무관인	2021. 5. 3일자 조직개편에 따른 부서 명칭변경	2021년 5월 10일	
인천광역시서구 경제정책과 물품운동관인	2021. 5. 3일자 조직개편에 따른 부서 명칭변경	2021년 5월 10일	
인천광역시서구 경제정책과 분임물품출납원인	2021. 5. 3일자 조직개편에 따른 부서 명칭변경	2021년 5월 10일	
인천광역시서구 경제정책과 일상경비출납원인	2021. 5. 3일자 조직개편에 따른 부서 명칭변경	2021년 5월 10일	
인천광역시서구 식품산업위생과 분임징수관인	2021. 5. 3일자 조직개편에 따른 부서 명칭변경	2021년 5월 10일	
인천광역시서구 식품산업위생과 분임재무관인	2021. 5. 3일자 조직개편에 따른 부서 명칭변경	2021년 5월 10일	
인천광역시서구 식품산업위생과 물품운동관인	2021. 5. 3일자 조직개편에 따른 부서 명칭변경	2021년 5월 10일	

등록공인명	등록사유	등록일자	인 영
인천광역시서구 식품산업위생과 분임물품출납원인	2021. 5. 3일자 조직개편에 따른 부서 명칭변경	2021년 5월 10일	
인천광역시서구 식품산업위생과 일상경비출납원인	2021. 5. 3일자 조직개편에 따른 부서 명칭변경	2021년 5월 10일	
인천광역시서구 도로과 분임징수관인	2021. 5. 3일자 조직개편에 따른 부서 명칭변경	2021년 5월 10일	
인천광역시서구 도로과 분임재무관인	2021. 5. 3일자 조직개편에 따른 부서 명칭변경	2021년 5월 10일	
인천광역시서구 도로과 물품운용관인	2021. 5. 3일자 조직개편에 따른 부서 명칭변경	2021년 5월 10일	
인천광역시서구 도로과 분임물품출납원인	2021. 5. 3일자 조직개편에 따른 부서 명칭변경	2021년 5월 10일	
인천광역시서구 도로과 일상경비출납원인	2021. 5. 3일자 조직개편에 따른 부서 명칭변경	2021년 5월 10일	
인천광역시서구 도로과 수입금출납원인	2021. 5. 3일자 조직개편에 따른 부서 명칭변경	2021년 5월 10일	

등록공인명	등록사유	등록일자	인 영
인천광역시서구보건소 치매정신돌봄과 분임징수관인	2021. 5. 3일자 조직개편에 따른 부서 명칭변경	2021년 5월 10일	
인천광역시서구보건소 치매정신돌봄과 분임재무관인	2021. 5. 3일자 조직개편에 따른 부서 명칭변경	2021년 5월 10일	
인천광역시서구보건소 치매정신돌봄과 물품운용관인	2021. 5. 3일자 조직개편에 따른 부서 명칭변경	2021년 5월 10일	
인천광역시서구보건소 치매정신돌봄과 분임물품출납원인	2021. 5. 3일자 조직개편에 따른 부서 명칭변경	2021년 5월 10일	
인천광역시서구보건소 치매정신돌봄과 일상경비출납원인	2021. 5. 3일자 조직개편에 따른 부서 명칭변경	2021년 5월 10일	
인천광역시서구 기후에너지정책과 분임징수관인	2021. 5. 3일자 조직개편에 따른 부서 신설	2021년 5월 10일	
인천광역시서구 기후에너지정책과 분임재무관인	2021. 5. 3일자 조직개편에 따른 부서 신설	2021년 5월 10일	
인천광역시서구 기후에너지정책과 물품운용관인	2021. 5. 3일자 조직개편에 따른 부서 신설	2021년 5월 10일	



등록공인명	등록사유	등록일자	인 영
인천광역시서구 기후에너지정책과 분임물품출납원인	2021. 5. 3일자 조직개편에 따른 부서 신설	2021년 5월 10일	
인천광역시서구 기후에너지정책과 일상경비출납원인	2021. 5. 3일자 조직개편에 따른 부서 신설	2021년 5월 10일	

□ 폐기 공인 내역

폐기공인명	폐기사유	폐기일자	인 영
인천광역시서구 경제에너지과 분임징수관인	2021. 5. 3일자 조직개편에 따른 부서 명칭변경	2021년 5월 10일	
인천광역시서구 경제에너지과 분임재무관인	2021. 5. 3일자 조직개편에 따른 부서 명칭변경	2021년 5월 10일	
인천광역시서구 경제에너지과 물품운용관인	2021. 5. 3일자 조직개편에 따른 부서 명칭변경	2021년 5월 10일	
인천광역시서구 경제에너지과 분임물품출납원인	2021. 5. 3일자 조직개편에 따른 부서 명칭변경	2021년 5월 10일	
인천광역시서구 경제에너지과 일상경비출납원인	2021. 5. 3일자 조직개편에 따른 부서 명칭변경	2021년 5월 10일	
인천광역시서구청장인/ 경제에너지과민원전용	인증기 노후 및 고장에 따른 폐기	2021년 5월 10일	
인천광역시서구 위생과 분임징수관인	2021. 5. 3일자 조직개편에 따른 부서 명칭변경	2021년 5월 10일	
인천광역시서구 위생과 분임재무관인	2021. 5. 3일자 조직개편에 따른 부서 명칭변경	2021년 5월 10일	

폐기공인명	폐기사유	폐기일자	인 영
인천광역시서구 위생과 물품운용관인	2021. 5. 3일자 조직개편에 따른 부서 명칭변경	2021년 5월 10일	
인천광역시서구 위생과 분임물품출납원인	2021. 5. 3일자 조직개편에 따른 부서 명칭변경	2021년 5월 10일	
인천광역시서구 위생과 일상경비출납원인	2021. 5. 3일자 조직개편에 따른 부서 명칭변경	2021년 5월 10일	
인천광역시서구 도시기반과 분임징수관인	2021. 5. 3일자 조직개편에 따른 부서 명칭변경	2021년 5월 10일	
인천광역시서구 도시기반과 분임재무관인	2021. 5. 3일자 조직개편에 따른 부서 명칭변경	2021년 5월 10일	
인천광역시서구 도시기반과 물품운용관인	2021. 5. 3일자 조직개편에 따른 부서 명칭변경	2021년 5월 10일	
인천광역시서구 도시기반과 분임물품출납원인	2021. 5. 3일자 조직개편에 따른 부서 명칭변경	2021년 5월 10일	
인천광역시서구 도시기반과 일상경비출납원인	2021. 5. 3일자 조직개편에 따른 부서 명칭변경	2021년 5월 10일	

폐기공인명	폐기사유	폐기일자	인 영
인천광역시서구 도시기반과 수입금출납원인	2021. 5. 3일자 조직개편에 따른 부서 명칭변경	2021년 5월 10일	
인천광역시서구 치매돌봄과 분임징수관인	2021. 5. 3일자 조직개편에 따른 부서 명칭변경	2021년 5월 10일	
인천광역시서구 치매돌봄과 분임재무관인	2021. 5. 3일자 조직개편에 따른 부서 명칭변경	2021년 5월 10일	
인천광역시서구 치매돌봄과 물품운용관인	2021. 5. 3일자 조직개편에 따른 부서 명칭변경	2021년 5월 10일	
인천광역시서구 치매돌봄과 분임물품출납원인	2021. 5. 3일자 조직개편에 따른 부서 명칭변경	2021년 5월 10일	
인천광역시서구 치매돌봄과 일상경비출납원인	2021. 5. 3일자 조직개편에 따른 부서 명칭변경	2021년 5월 10일	
인천광역시서구 지역보건과 분임징수관인	2021. 5. 3일자 조직개편에 따른 부서 폐지	2021년 5월 10일	
인천광역시서구 지역보건과 분임재무관인	2021. 5. 3일자 조직개편에 따른 부서 폐지	2021년 5월 10일	

폐기공인명	폐기사유	폐기일자	인 영
인천광역시서구 지역보건과 물품운용관인	2021. 5. 3일자 조직개편에 따른 부서 폐지	2021년 5월 10일	
인천광역시서구 지역보건과 분임물품출납원인	2021. 5. 3일자 조직개편에 따른 부서 폐지	2021년 5월 10일	
인천광역시서구 지역보건과 일상경비출납원인	2021. 5. 3일자 조직개편에 따른 부서 폐지	2021년 5월 10일	